

제425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14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0)
-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 상정된 안건

- |  |    |
|--|----|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4) .....                                    | 7  |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 20 |
|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                                    | 20 |
|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                                    | 20 |
| 4.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0) ..... | 20 |
| 5.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                                   | 20 |
| 6.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  | 38 |
|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                                    | 43 |
|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                                    | 43 |
| 4.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0) ..... | 43 |
| 5. 현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                                   | 43 |
| 6.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  | 66 |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가 제1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최근에 벌어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현정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도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국민적 신임을 배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고 사퇴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일주일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의결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또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16명 전원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사유서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사유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5년 5월 9일 조희대’.

○곽규택 위원 맞는 말씀이네, 맞는 말씀 하셨네요.

○유상범 위원 그것은 맞는 말 했네요. 정확하게 하셨네요.

○위원장 정청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도 공개해?

○위원장 정청래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불출석사유서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합니다. 보통의 경우 불출석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합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사유서는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송석준 위원 그만큼 명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오죽하면 그렇게 썼겠어?

○장경태 위원 초등학생들 반성문도 저렇게 제출 안 해요, 요즘에.

○위원장 정청래 세 줄짜리, 네 줄짜리.

○송석준 위원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여러 장이 필요합니까?

○장경태 위원 대법관들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대법관들 초등학교 나왔어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 조용히 하세요.

○유상범 위원 너무 명확하니 간단히 적는 거지, 뭘.

○곽규택 위원 너무 명확하니까 불출석 사유를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장경태 위원 초등학생도 그렇게 제출 안 해요, 요즘에.

○위원장 정청래 세 줄로 쓰기에 민망했던지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억지로 다섯 줄짜리로 만든 대법관도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송석준 위원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이 되는 거야. 궁색할 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유상범 위원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거야. 잘 알잖아.

○장경태 위원 공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 국민 앞에 대법관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공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에 비해서 육필로 본인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육필로 이렇게 쓴 불출석사유서 또한 처음 봅니다.

○송석준 위원 정성이 깃들어 있네요. 진정성이 물어나네요.

○이성윤 위원 같은 대법관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위원장 정청래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 왔던 대법관 중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유상범 위원 여기서 계엄이 왜 나오나? 기승전 계엄이야?

○장경태 위원 계엄 반성 안 해요? 계엄 반성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송석준 위원 예의를 지키세요.

○장경태 위원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찬성해요, 반대예요?

○위원장 정청래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자업자득입니다.

○장경태 위원 김문수 파면은……

○**송석준 위원** 경고, 경고.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에헴’ 하고 앉아 있는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봇물이 터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봄날을 맞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법부도 봄이 오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앞의 이것 좀 떼게 해 주시지요. 이게 회의 질서유지에 방해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앞에 뭘 붙여 놓고 있는데요,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계엄 사과, 탄핵 인정’ 붙여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제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국회법 제148조입니다.

○**장경태 위원** 일단 한덕수랑 단일화부터 하고 오세요. 한덕수랑 단일화 안 합니까?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이 오늘 유독 목소리가 큰데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2차 경고.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걸 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148조 위반입니다. 떼세요.

○**곽규택 위원** 또 경위 불러서 떼라고 그러세요.

○**김용민 위원** 고집부릴 걸 부립시다.

○**위원장 정청래** 떼세요.

○**장경태 위원** 저희도 불이시지요. 간사님, 저희도 붙여 주세요. 한덕수 단일화하라고, 김문수 파면하고. ‘계엄 사과. 대통령 탄핵 인정’.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내에서도 후보 자격 박탈하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의사진행인데 그게 방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정청래** 딱 보면 압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유상범 위원** 딱 보면 알아? 그러면 이재명 무죄하는 걸 재판하는 거고……

-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 곽규택 위원 어떻게 딱 알아요? 관심법 씁니까?
-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148조 위반입니다. 지금 부착물 때세요.
- 박준태 위원 뭐가 위반이라는 거예요? 무슨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 위원장 정청래 국회법 148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 박준태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뭐가 방해가 되는지 설명을 해 봐요.
- 유상범 위원 회의 진행 방해가 뭐가 되는데요, 이거 붙여 놓은 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설명을.
- 위원장 정청래 때세요.
-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왜 방해가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워낙 잘 아신다고 하니까.
- 위원장 정청래 제 시야가 방해돼서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 유상범 위원 그게 회의 방해예요?
- 곽규택 위원 위대하신 위원장님, 이쪽 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 위원장 정청래 때세요.
- 송석준 위원 지금 국민들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참 공감이 간다. ‘의회 독재, 사법 탄압’ 그거 정말 보기 좋다” 이러시네요. 보기 좋은 걸 뗴 필요 있을까요?
- 김용민 위원 벌써 야당 연습해요, 붙여 놓고 있게?
- 위원장 정청래 때세요.
- 박규택 위원 작년에 떼라고 그러셔서 우리도 뗴 적이 있는데.
- 송석준 위원 보기 좋대요.
- 김용민 위원 보기 좋으면 위원님만 보고 계세요, 이렇게.
- 송석준 위원 그럴까요?
- 김용민 위원 이렇게만 보고 계세요.
- 송석준 위원 이게 보기 싫으신가 봐. 마음이 찔리시나 보네.
-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때세요.
- 김용민 위원 정치 구호를 왜 외쳐요?
- 송석준 위원 국민들이 보기 좋다고 그러시는데 뒤야지, 이걸 떼면 되겠어요?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유상범 위원 그러지 말고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때세요.
-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면 뗄게요. 우리 두 분 주세요.
- 곽규택 위원 발언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3분 하시고……
-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박범계 간사님 3분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부착물에 관한 거니까 양 간사님들께서 3분씩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떼시기 바랍니다.
-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건 곽규택 위원이니까 거기다가 줘야

지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들의 역할이 왜 필요합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간사들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당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간사가 취합을 해서 간사 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리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착물에 대해서는 유상범 간사님께 왜 붙였는지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면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꽈규택 위원이 요청했으면……

○**위원장 정청래** 간사님만 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꽈규택 위원의 요청을 이런 식으로 의사 방해 발언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조배숙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주진우 위원** 그러면 민주당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꼭 주라는 법도 없어요. 아셨어요?

○**주진우 위원** 민주당은 이제 의사진행발언 안 할 거예요?

○**조배숙 위원** 왜 안 주십니까? 그런 법이 어딨어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은 국회법 49조 1항에 의해서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은 모든 위원에게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할 의향이 없으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그냥 붙이고 해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박범계 위원** 준비가 안 돼 있구먼.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준태 위원** 아니,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시켜요?

○**송석준 위원** 저는 하고 싶다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눈빛으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송석준 위원** 저 하고 싶어요.

○**박준태 위원** 하고 싶은 분을 시켜 주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관심법을 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나.

○**조배숙 위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해요.

○**김용민 위원** 눈빛으로 대화 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려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 조배숙 위원 조건부니까 그렇지요.
  - 박범계 위원 왜 그걸 걸었는지 얘기를 해 보라니까.
  - 김용민 위원 그러게 왜 그 얘기를 못 하셔?
  - 박범계 위원 왜 그걸 얘기를 못 해.
  - 유상범 위원 얘기하지요.
  - 박범계 위원 빨리해, 그러니까.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시고요.
  - 유상범 위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안 주잖아. 원하는 사람을 줘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 박범계 위원 시간 내로 해.
  - 장경태 위원 그러면 간사 교체하세요. 광규택 위원님 간사 잘하실 것 같습니다.
-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4)

(10시11분)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장경태 위원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많으신데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오늘 잘못하면 퇴장당하실 수도 있어요.

- 송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세 번은 드렸어야 돼요.

-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장경태 위원보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더 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범 위원 누가 심해? 제일 심하구먼.

- 위원장 정청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완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250조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고 제110조제1항의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 및 제110조의2제1항의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의 허위사실공표 대상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토론은.....

- 유상범 위원 5분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3분으로 하세요. 할 것도 많아요, 지금.

- 유상범 위원 할 게 뭘 많아.

- 위원장 정청래 3분으로 압축 요약해서..... 짧게 말하는 것도 말하는 기술이에요.

○**유상범 위원** 그것은 마이크가 안 꺼지니까 늘 그렇지.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은 수십 번 하시더만.

○**이성윤 위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우리도 듣게.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지금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법은 '행위'를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배숙 위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직에서 사퇴하고 피선거권이 상실됐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인데요. 과연 이게 평등의 원칙에 맞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서, 이미 위헌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이미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금 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뿐이 아닙니다.

○**박희승 위원** 제 법안은 다 폐지입니다, 다 폐지. 말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제 법안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인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형평에 어긋나고,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모든 것을 폐지하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은 선거제도나 선거에 관련한 형별법규는 입법정책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제도나……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정말 양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입법권을 가진 국회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전투표에 있어서 원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실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것은 이미지 출력을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원래 법대로 이 실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투표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입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본투표에 대한 절차와 사전투표 절차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제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식의 규칙을 지금 상정한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선거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오히려 규칙을 법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실체적으로 운영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제대로 시행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조배숙 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갔을 때 부정선거의 의혹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이게 실제로 정당하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다시 한번 고지시켜 드리는데요, 발언시간이 끝나고 답변하는 시간은 제가 어느 정도 드리는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낸 법안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폐지 법안을 준비해서 낸 것입니다.

미국 사례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로 한 번도 형사 기소돼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미국 주 중 두세 개에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는데 사문화돼 있고 한 번도 형사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중대한 권리지요, 국민의 알권리—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법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직선거법에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더구나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또 낙선자 같은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 10년 출마하지 못하는, 꽁

장히 염격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법원에서도 ‘돈은 묶고 말은 푸다’는 그런 전제적인 흐름과도 맞지도 않고 지금은 특정 언론매체 몇 개뿐만 아니라 본인이 SNS로 모든 얘기를 다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게 제가 발의한 주요 논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칫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선기간에 엄청난 허위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낙선자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조사를 받았고 또 기소까지 된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 해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것이고, 다만 이 법안 중에 특히 행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개정할지 폐지할지 정해지겠지만 그것과 아울러 당선무효 기준도 저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 이게 국민 법 감정하고도 안 맞습니다. 아니, 중요한 직위를 상실시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의 법 위반인데 고작 별금 100만 원 가지고 당선되느냐 아니면 무효냐 이렇게 선언한다는 게 너무 작위적이고 현재 물가수준이나 경제적 상황과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선무효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이런 조항을 제가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평소 소신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기본적으로 250조 1항의 입법취지는 유권자의 선택, 그 의사를 왜곡시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행위 개념이 들어간 게 2000년인데 지금 2025년까지 25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적용이 되어 왔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250조 1항에 대해서, 즉 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1년도 그다음에 24년도에도 동일한 취지로, 즉 행위의 개념은 일상생활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 요소가 아니다. 법원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그 행위의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

○**위원장 정청래** 총장님, 말씀 중에 국민의 인식에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

○**유상범 위원** 아니, 말을 다 듣고 하든지, 그걸 그렇게 잘라요? 불리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청래** 다 들었어요.

사무총장님께서 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위라는 부분을 넣어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이것이 20년 전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행위라는 말을 빼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정청래**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입법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다면 이 행위를 넣고 안 넣고는 국회의 입법 재량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거기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다 말씀하셔야지 한쪽만 말씀하시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끊으셔서.....

○**위원장 정청래**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둘 다 말씀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장이 말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불리하다 싶으면 본인이 말을 바꾸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제가 불리한 내용을 유도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유도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반쪽짜리 진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듣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까 얘기 다, 입법정책적이라는 이야기도 이미 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오늘 너버스(nervous)합니다, 너무. 왜 그러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유난히 심하잖아요, 오늘 또.

○**곽규택 위원** 아름다운 국어 쓰세요.

○**유상범 위원** 너버스는 한국어로 뭐예요? 해석해 보세요.

○**위원장 정청래** 알아서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곽규택 위원님도 재선 삼선 하면 위원장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위원장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우세요.

○**유상범 위원**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고, 시간 보내지 말고 토론 기회나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다음 곽규택 위원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

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또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세 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위원장 정청래 계속하세요.

○곽규택 위원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들께서 왜 대법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 올라온 법들이 왜 필요한 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토론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오늘 올라오는 모든 법들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헌법재판소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 나온 법들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해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불출석사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들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국민들께서 왜 오늘 지금 법사위를, 이 대선 정국에 법사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똑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스스로 본인을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잘하셨어요. 그런데 좀 귀여우시네.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것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위원님은……

○곽규택 위원 사제폭탄 만들려던 사람이 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덥고. 하여튼 곽규택 위원님 좀 귀여웠어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박지원 위원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이 동일 체급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참 코미디입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 수장에 대해서 퇴직을 하면 우리나라 1~3년을 자동차 그리고 경호원을 붙입니다. 윤석열, 5월 10일 취임하고 5월 11일 아침 9시에 국정원장인 저에게 전화해서 ‘나가라’ 그래서 저도 경호원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전원 철수시켜 버리더라고요.

만약 정보수장이 납치를 당하면, 살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불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 파면되고도 경호를 받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곽규택 위원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펌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수행실장을 개별적으로 채용해서 함께 다닙니다. 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를 납치했

을 때 제가 살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다 불어 버리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강화된 경호를 했습니까?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펌훼된 말씀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공직선거법은 정말 웃긴 법안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가지고 선거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무총장님, 아까 선관위 입장이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입법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행위 부분을 없애게 되면 사실상 공보물에 경력이나 학력 외에 나머지, 어떤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후보자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진우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경력에 포함돼서 처벌한 예는 있습니다. 다만 컨덕트(conduct) 즉 단순한 행위, 사실관계에 대한 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건 맞고요.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즉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 입법 과정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선거제도는 원래 대국민 인사청문회랑 똑같은 거거든요. 민생에 바쁜 국민이 어떻게 일일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입후보자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모든 의혹 제기나 어떤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냥 ‘아닌데요’, 무조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할수록 유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부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다 하고 뭐만 빼하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선서하고 청문회에서 허위로 얘기했을 경우에 다 고발하고 형사처벌하는데 왜 입후보한 정치인들은 선거 과정에 국민 앞에서 거짓 말해도 아무것도 처벌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의원 권한은 늘리면서 국민 권한은 줄이는 꼴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위를 없애게 되면 자기 과거 실적을 입으로 막 떠들고 다녀도, 없었던 일을 지어내 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어떤 의혹 제기가 됐을 때 비리 의혹이 있어도, 최근의 비리 의혹이나 금품비리나 이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돼도 아니라고 하면 그뿐

입니다. 그러니까 입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참정권보다 앞장세우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서는 선관위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선거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진우 위원님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기각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법원 파기자판 얘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었어요?

○**주진우 위원** 파기자판이 당위지요. 이번에 출마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주장을 담은 거짓말이지요.

○**주진우 위원** 당위를 얘기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마치 본인은 이슬처럼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본인도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주진우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백현동 비리 했습니까? 제가 대장동 비리 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백번 양보하더라도 거짓 주장이잖아요.

○**주진우 위원** 백현동, 대장동 비리 한 게 누군데요? 국민 앞에서 거짓말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사돈 남 말하지 맙시다.

○**주진우 위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비난 받아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박범계 간사님.

○**김용민 위원** 윤석열 추가조작 얘기나 잘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전형적인 거짓말이지.

○**박희승 위원** 아니,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거로 처벌하면 됩니다.

○**주진우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법안을 어떻게 냅니까?

○**박범계 위원** 조용히 좀 해 봐요.

박범계입니다.

사무총장님, 법관을 오래 하셨는데 1994년에 허위사실공표를 포함하는……

2000년부터 허위사실공표죄가 도입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행위 개념이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박범계 위원** 예, 행위 개념이.

공선법은 199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1994년은 1988년 대한민국 올림픽 이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1994년 이전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없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있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범계 위원 1988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 도상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지요. 즉 이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직선거 문화가 선진적이냐 안 선진적이냐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취지라고 보여져요.

이 조항은 허위사실공표죄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사실’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렴풋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되는 조항은 ‘행위’입니다. 사실과 행위는 표현이 다르지요. 맞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다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하급심 판결 1심과 2심이 다르고 대법원이 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어떤 의견이냐, 사실이냐, 행위냐, 인식의 범주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중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이 극명하게 견해가 나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박범계 위원 맞지요?

당초에 이 행위라는 개념을 넣어서 규율하려고 했던 입법취지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처럼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할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당시에 그런.....

○박범계 위원 당시에, 2000년에 그랬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는 선거의 공정성 유무라는 것도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 왜? 결국은 검찰과 법원이라는 사법적 기관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지. 과연 이재명 후보께서 했던 이 발언, 이 사진 가지고 만약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난번 선거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법관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뺀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총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행위 개념을 삭제한다 그래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하나씩 다 시켜 주세요. 송석준 위원이 아까부터 손 들었으니까 먼저 시

켜 주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유상범 위원 법이 몇 개 없는데 그래.

○송석준 위원 그런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는데.

○위원장 정청래 아니, 잠깐만요. 내려 보세요.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너그럽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알았어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 송석준 위원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정말 눈물 나네. 눈물 나.

○위원장 정청래 눈물 닦으세요.

빨리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고맙습니다, 간사님.

○위원장 정청래 빨리하세요.

○송석준 위원 이제 조기 대선 20일 남았습니다. 지금 선거 열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에 오늘 법사위가 뜬금없이 열린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6개 안건이지요. 하나하나 보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

법사위라는 것이 사법 정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주무 상임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사위가 어떻게 오늘 이재명 방탄,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상임위를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엽니까?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잘썼다 하는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의,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됩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지금 대체토론 시간이니까요.

공직선거법 이게 얼마나 웃기는 법입니까?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은 선거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선거판을 흐릴 수 있는 아주 나쁜 죄인데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빼겠다? 사실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송석준 위원 이렇게 행위를 삭제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면 결국은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을 만들어 가면서 까지도 오로지 ‘묻지마, 이재명을 당선시키자’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자중하십시오.

존경하는 사무총장님,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 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오죽하면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이번 대선을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정선거의 소

지 없이, 특히 사전선거 과정에서 관리상 많은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해서 공정 선거를 보장할지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저희가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 못 들어드리는 게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날인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규칙으로 바꿨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거관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볼 때 22대 국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선거관리 부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수십만이 동원돼서 치르는 선거제도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관리 부실이 행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모의실습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며칠 안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22대 국선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선거 참관단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론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선거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선거관리를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고요.

토론은 이제 다 하셨어요.

○**유상범 위원** 종결동의가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켜 주세요. 종결동의가 없으면……

○**위원장 정청래** 알았고요.

○**박균택 위원** (손을 들)

○**유상범 위원** 왜 또 뒤늦게 들어. 다음에 해야지. 타임 놓쳤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님, 잠깐만요.

토론 종결동의 하지 마시고 유상범 간사님 하시고. 이것은 표결 없이 그냥 합시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건 좀 다른 얘기지.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왔다 갔다 다르세요, 또?

일단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돼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현재에서 두 번이나 위헌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국민들 대부분은 허위사실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차원이고 후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들도 전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00년 들어올 때 그 전에 많은 마타도어, 허위사실 공작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쳐벌이 안 됐지요. 일반법으로만 쳐벌됐지요. 그러나 선거

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대한민국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성 그다음에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법안 아닙니까? 사무총장님도 동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 됐을 때는 행위 개념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된 부분은……

○**유상범 위원** 그게 오세훈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취지가 뭐였냐면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학력 경력 출신 전과 이런 부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유상범 위원** 총장님, 지금 간단히 답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런 취지가 뭐냐면……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위헌이 있거나, 법을 개정할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된 게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확정의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참석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유상범 위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방 통과시키고 여기까지 왔어요. 법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유죄 확정이 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안이 나왔다면 이 법안은 무슨 법안이에요?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재명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이라고 답을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원론적인……

○**유상범 위원**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국민 누가 봐도 이 법안은 이재명의 무죄를, 이재명의 면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21세기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민주화하고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만은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것 반대하셔야지요. 어떻게 사무총장님이 여기서 입법정책적이라고 답을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좀 이따. 아까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먼저 밟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동의는 표결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처리할 때 반대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의결?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 표결은 안 하겠다고.

○**유상범 위원**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한번 연기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반대는 이따 하시고.

○**유상범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번 달에 본회의 예정이 안 돼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을 표결하자는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총장님, 선거기간이니 만큼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적발,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방하고, 한때 유행어였던 계몽이 목적이지요? 그게 더 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계도 업무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혹시 선거법을 잘 몰라서 선거법 위반 사범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선관위가 활동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좀 오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마포에서도 약간의 일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유세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유세 차 뚜껑을 열어 보고 사진 찍고 그러면 그것 보시는 분들이 ‘어, 저기는 선거법 위반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유세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당한 업무 활동이라도 유세에 장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마치 행사장에 난입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해서 그 부분을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겠지만 이것을 표본 삼아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고. 그 직원에게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 계기로 다른 선관위 직원들도 저렇게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좀먹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 또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그걸 충분히 대비하고 있겠지만 빌미 잡힐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선에 철저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정청래 좋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51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안 들었으면 안 든 거지요.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4.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0)
  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10시52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김용민 의원안은 30명, 장경태 의원안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수 증가는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대법관의 임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과 사법부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법원조직법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운영 그리고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대법관 증원은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김용민 의원안은 증원되는 대법관 16명을 2년간 8명씩, 장경태 의원안은 증원되는 대법관 86명을 3년간 28명, 29명, 29명 순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계적 증원 규모는 현행 대법관 교체 시기, 국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 절차, 다수 대법관 일시 증원 시 적임자 충원 가능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법작용을 통한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국가작용이 기본권에 보다 부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입법작용,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며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 증대 측면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소년원 학생 봉사활동 격려행사 참석이 예전에 예약이 되었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출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한 가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조금 후에 실시될 인사청문회 때는 본인이 출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입장은 밝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아, 그냥 청문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 첫째는 제가 거기에 증인이나 참고인 등 적법하게 채택 소환된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을 어떤 권리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번 청문회가 결국은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청문회 의결 때는 법원행정처장은 당연하게 당연직 출석으로 예상이 되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대법관들 다 증인 출석 의결을 하면서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인데 왜 법원행정처장만 빼놓고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굳이 당연히 출석할 분을 의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뺏었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청문회장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저는 본인의 권리고 주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국회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청문회 때 나온 얘기들을 법원에 전달해야 될 본인의 국회 임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의 국회에 대한 고유한 업무로 봤을 때는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보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직원들이 돋기 위해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장관 청문회다 그러면 기조실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뒤에 배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결을 안 했다 할지라도 배석해서 입장을 얘

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 대법관들께서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고 또한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실체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검사동일체는 들어 봤어도 판사동일체는 처음 들어 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 개인적인,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도 제 독자적인 생각으로도 그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 업무는 원활히 잘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TV를 통해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현장에 있는 것과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결을 할 걸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의결했어도 안 나왔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준비해서 물어볼 것이 많다고 하니 대신 대체토론을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건 뭐 자기 편한 대로 해, 어떻게?

○조배숙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은 5분간……

○곽규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원래 국민의힘도 대체토론 3분 주면 ‘5분 주세요. 5분 주세요’ 하잖아요.

○유상범 위원 협의도 안 됐어요. 협의도 안 됐잖아요. 요청을 한 것도……

○곽규택 위원 아니, 그래도 아까 법안으로 했던 것하고 같은 시간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간사 간 협의하세요, 그러면. 간사 간 협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3분?

○김용민 위원 7분 달라고 하세요.

○유상범 위원 협의할 생각이 없네. 3분으로 하세요.

○장경태 위원 7분 필요합니다.

○박범계 위원 5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손 한번 들어 보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원 다기 때문에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상호간 설득과 숙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의 빠른 심리까지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입니다.

이례적인 파기환송 관련해서 지금 형사사건은 상고심 파기율이 얼마나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2023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 파기율이 1.6%에 불과하다는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정도일 걸로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번 상고심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고,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사례가 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자주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안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기율이 낮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바하고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과거에 보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관행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1심이 무죄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바꾼 그런 사례들은 간혹 봤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한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파기한다 이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참 이례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신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은…… 미국에서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대선 뒤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선거 관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해 가지고 판사가 선고를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부분들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것이 대법원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생각에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개별 사안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박희승 위원** 물론 재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정말 오해받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당사자들이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내용, 결과보다 어쨌든 외부의 오해를 사는 듯한 그러한 이례적인 일이 여러 번 겹쳤다는 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특히나 지금 우리 법관들이 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래서 아주 법률 전문가인 건 맞는데, 주로 민법이나 형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그런 실체법들에 치중해서 재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 공부는 대개 사법시험이나 요즘은 다

른 변호사시험 볼 때 공부하고 그 뒤로 헌법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헌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잊고 지낸 것 아닌가.

시작할 때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께서도 국민주권 그다음에 민주공화국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지만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자면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된 권력이 더 존중받는 그게 헌법체계고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선거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사법 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삼권분립 원리에 의해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총공격, 공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99%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판결하는 것이 법원과 판사의 임무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면 항소심을 존중하는데 왜 3심에서 파기를 했느냐 하고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데 이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집행유예? 그리고 2심에서 무죄. 그러면 1심과 2심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3심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00% 다 항소심 의견을 존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안마다 다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1심 유죄, 2심 유죄 또 3심에서 결론 바뀌거나 2심 무죄가 또 결론이 바뀌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사건에 따른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파기환송되고 나서 5월 15일 날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총공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선 이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다 출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

해서 사법부가 결국은 백기를 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재판의 진행과 또 결론 모두에 있어서 개별 법관들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에서 각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5월 15일 날 그 기일 정한 것은 몰랐나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냈어요. 공판절차 정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재직 중에 범죄로 인하여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얘기하는데 소추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또 갈리는 것 같아요, 소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추라는 것이 문면상으로는 기소와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 원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평등 조항의 예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확대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 전에 재판됐던 것, 지금 공판기일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로? 저는 그게 예정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이 대선이 정말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사 죄명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무슨 성폭력이나 살인 등 어떤 과정치범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판사 증원법을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30명 또 어떤 분은 100명 이렇게 증원을 했는데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의결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네 분이지만 실제 열세 분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열세 분.

○조배숙 위원 왜냐하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을 못 하니까 홀수로 했고 그리고 그 정도가 서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숫자다. 그런데 만약에 30명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심과 2심, 사실심에서 확정이 되는 재판이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심에서 제대로 재판하기에 버거운 사건 때문에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의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심의 확대·강화와 더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제도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사법제도 전체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사법제도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따라서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아주 치밀한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대법관 증원보다는 일선 판사의 증원이 훨씬 더 지금 다급하다는 얘기 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사법부의 신뢰는 결국에 재판으로써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좋은 판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사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엉뚱한 판결, 이상한 판결,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잘 모르는 법조인들의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진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민 위원** 안 되지요?

수술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더 청렴해야 되고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단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김용민 위원**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물론 저희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민 위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민 위원**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김용민 위원**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는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보면 법원행정처장님이 윤리감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

답변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저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저런 식으로 좌표 찍기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왔던 이 법안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같은 걸 발의하는 것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전 대통령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혹은 겁박을 했었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임명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현행 법률상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법원 판결의 존중 이야기로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자 법치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 또 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같은 단일국가에서 이런 제도 도입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소원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 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과 장고한 돈과 장고한 노력 장고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빙익빈이 재판 과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소위와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진우 위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세금을 떼인 국민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 이런 분들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세상이 되는데 단순히 이재명 후보 유죄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검토나 이런 논의도 없이 이런 법안을 어떻게 함부로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잘 경청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재판 지연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는 것이지 대법관 숫자만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 발언한 것 보니까 제가 좀 실소를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 2년간 대법관을 8명씩 증원하겠다는 거고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100명을 증원하면 3년간 1년에 28~29명씩 증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명씩 대법관을 새로 지명하고 늘려야 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그것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

금 헌법체계하에서도 대법관의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또 대통령 임기 5년으로 해놓은 것은 각각 임기를 달리해서 헌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주진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것만 딱 원포인트로 개정해서 특정 대통령이 대법관을 팔십몇 명씩 지정하면 대법관의 권위나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며, 저는 그 제도가 헌법적으로 합치가 안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역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결국에는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더 적은 대법관 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경우에도 대법관 수 자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을 보면 역시 부장 법관과 기타 법관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고지해 드립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오늘 대체토론은 7번 서영교 위원님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인 중에 한 분이 학교 수업으로 인해서 오전에 진술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학 교수님이신데요, 이성윤 위원님이 꼭 그분에게는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마치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좋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상고부 제도 도입이 여러 가지……

○장경태 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지요, 오클라호마주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연방은 별도로……

○장경태 위원 민사부, 합의부 다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는 120여 명, 스페인은 80여 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에도 재판연구관이 101명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대법관 14명과 재판연구관 101명, 그래서 사실상 비판하시는 분들은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 재판연구관은 판사도 아닙니까? 재판연구관도 법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경태 위원 법관입니다, 재판연구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상고법원인지 상고배심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청문회에 대한 요구자료 답변서가 오전 8시 30분에 제출됐습니다. 이건 그냥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지요, 이제.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8시 30분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하고 나서 10시에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출 못 하겠다…… 하루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끝나고 하십시오. 어차피 저는 질책만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번 질의 때 재판연구관들 보고서 그리고 작성에 참여한 재판연구관 또 별동대 10인의 존재, 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7조 2항에 따른 다른 결과 중간보고에 대한 이행 여부 이 부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재판과정, 즉 심증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셨어요? 처장님은 확인하셨냐고요, 저희한테 제출 못 하시더라도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아니, 재판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판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서가 쓰여졌는지, 재판연구관들이 제대로 별동대가 구성됐는지 그리고 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대법관들이 다 공유받으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지 대법관들이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절차는 실체 형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절차에……

○장경태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법원행정처장님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못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법원행정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들께서 전속 재판연구관 2명씩 두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처장은 안 계시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 왜 이렇게 출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 대법원장은 전속 연구관 2명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습니까? 비서실 판사 3명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은 재판연구관 조직에서 수석 및 선임을 토대로 해서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심리불속행 하지 못하는 형사조 공동재판연구관도 다 있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공동조, 신건조 다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대법원이 참…… 저는 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별동대 TF를 꼭 구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검토보고서도 보시지 못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았으면……

○장경태 위원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출속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명문을 얘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그 판결문 아시나요, 혹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 판결은 예전에 본 적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 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부서장회의에서 발언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건화까지 했고요. 국정원 사이버팀 70~80명이 야권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 조작까지 했습니다. 모 정치인은 징역 2년 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희대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냅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그냥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겁니다, 전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관의 소신입니까, 이것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경태 위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 정치적 판결의 상습 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초에 비상계엄 되었을 때 최초로 위헌성을 제기한 분이 우리 대법원장님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조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저희 서울고등의 부장판사님 한 분도 거기에 지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은 인사발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장께서는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법무부장관대행님,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추후 진행될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5일 상고심 파기환송심이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이 부분의 대법원 당사자인데 5월 1일 파기환송심 문제가 있던 판결이었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이든 1심·2심 판결이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현 제도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밝혀졌어요. 종합적으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이번에 우리 22대 국회 출범을 통해서 거대 야당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부를 발목 잡게 하고 행정부를 이렇게 봉괴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 일련의 정치 혼란을 통해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엄정히 삼권분립이 보장되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합의하고 모두가 부려워하는 그러한 국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야당에 의해서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더니 이제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마저 이렇게 겁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를 하려고 그립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나왔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국민에게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또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석준 위원** 잘못된 건 고쳐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허용되는 현 헌법 시스템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월 3일 날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구체제, 19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제도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대법원 시스템의 여러 가지 인적 부족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면은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삼심제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대법원장이, 5월 1일 유력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실상 선거법 위반 최종판결 심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사법부는 도저히 자기들이 용서할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잘못을 한 사람이 판결에 대해서 엄중히 수용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이것 용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사법부의 모든 법관들은 제가 처음 법관을 할 때부터 그랬고 또 지금도 모든 법관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 권리 보호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보호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 국회가 갖고 있는 소위 탄핵, 특검, 청문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쁜 선거 과정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붕괴시키고 무너트리려고 하는 이러한 만행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원행정처장님, 이러한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에 절대 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엄정한 판결을 지켜 주세요. 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맡은바 헌법적인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폐기환송한 사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행정처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은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없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대법원에는 제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지요? 법무부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본 적 없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공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있냐고, 없냐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지요?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폐기환송시키는 사례를 세 분의 기관장들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원은 그런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법원인데요. 어떤 대법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그것 따라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3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분,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짜 범인 잡고 난 다음에 그분 재심받아서 무죄됐잖아요. 그래도 3심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엉뚱한 열다섯 살짜리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몰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진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 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 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재생)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또한 그런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과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것 안 봐요. 우리는 과기환송한 상고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차대한 것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

○서영교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쳐장님.

보세요. 이것을 대체토론이 아니라 청문회 때 쳐장이 나가 버리고 이것을 했으면 해명이나 답변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나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또 나오면 그때 뛰어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그래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오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위원장 정청래 만약에 본인이 그냥 계신다고 했으면 대체토론 빨리 끝내고 청문회 때 나올 내용인데 본인이 그때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이 청문회에 대한 저희 전체 법관들의 입장을……

○장경태 위원 그게 대법원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법원이 판단하시냐고요.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지방방송이 많아.

○곽규택 위원 그렇게 강요하시면 어떡해요, 강요지.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장경태 위원 아니, 왜 대법원이 정치를 하냐고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이따 청문회장에 안 계신다면 서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다시 와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경태 위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참석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일단 이것 발언하세요.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서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9일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7일 날 상고기록이 접수되고 나서부터 치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조에 대해서 믿음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됐어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답변했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 말씀……

○위원장 정청래 됐고요.

○곽규택 위원 됐다잖아요, 지금.

퇴장시키세요, 퇴장.

○서영교 위원 우선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라고요? 그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 또 나온 녹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두 쪽 나도’라고 답변을 하지요? 여기 나와서 한 답변이 사실이 아니면 그대로 묻는 겁니까, 지난번처럼?

○곽규택 위원 이게 질서 문란시키는 행위지 뭐예요.

○위원장 정청래 운영 규칙도 동등하게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그래서 대법원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이런 의혹을 주는데 저는 이거 충분히 의심 갈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제보도 그렇고.

○위원장 정청래 됐고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 맞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시간 내에 질문하고 발언시간 끝난 다음에 답변 기회는 드리는데 다시 질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점심시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처장님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행정처장께서 청문회 과정에도 배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유상범 위원 그만 강요하세요. 그만 강요해.

○박준태 위원 속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생각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정통하시고 위원회의 진행을 원칙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 법관들이, 어쨌든 재판 관련한 청문회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토론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조금 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잠시 대체토론을 중단하고 청문회를 열어 서보학 교수님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

학 교수님에 대한 질의 후 잠시 정회하고 오후 속개 시 다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이어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잠시 이석하셨다가 오후 속개 시 다시 출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속개가 몇 시예요?

○**위원장 정청래**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 6.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11시45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의결로써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17인과 참고인 4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1인과 참고인 3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16인은 재판의 과정 및 내용 등이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 변호사입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이십니다.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석호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석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증인 서석호

○위원장 정청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주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면 되겠지요?

○박범계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보학 교수님께 질의하실 이성윤 위원님께서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문회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 서보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다 아시는 것처럼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속도전을 펼쳐서 하급심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과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저는 그것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유력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의도 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행위를 한 것이고 또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특정 후보의 선거 개입, 낙선 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법원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런 선거 개입에까지 나서게 됐는지 생각……

○참고인 서보학 민주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 아닙니까? 대법원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예전의 상례로 보면 검찰은 하던 수사 또 법원은 하던 재판을 대선을 앞두고는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이례적인 행태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저는 대법원이 국민들 위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제약하고 스스로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오만한 자세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대법원은 이런 국민 비판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런 사법권을 법원에 준 게 국민이지요?

○참고인 서보학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국민주권을 이렇게 망치는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옳다고 보

십니까?

○**참고인 서보학**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주권재민입니다. 대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허락하고 보장하는 한도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이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어떤 감시와 비판을 회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회피한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인지 아니면 법대 위에 앉아 있는 판사 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교수님께서 지난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재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윤석열, 김건희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과 다르게 대법원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인 서보학** 급하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고등으로 내려보냈고 또 파기환송 재판부도 처음에는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가 저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서둘러서 유죄 판결 선고를 하고 대법원에 재상고됐을 경우에 저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지만 틀림없이 대법원이 피고인 측의 재상고이유서를 받아 보지 않고, 기존 1심 2심 상고심에서 제기되었던 피고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봤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박탈형이 포함되는 그런 유죄 판결을 확정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성윤 위원** 최근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윤석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지금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왜 내란 수괴를 풀어 줘야 했을까요?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저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형법각론을 강의하는데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가 살인죄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우리가 국사범이라 그래 가지고 정말 중한 죄로 다스리는 것인데 내란죄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또 자기 지지 세력을 선동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밑에서 중요 임무 종사를 했던 사람은 다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뭔가 이 사안의 엄중함 또 이 내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법원의 권위,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속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냥 이성윤 위원님 질의 하나 받고

가시는 게 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차피 5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 질의를 그냥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교수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서보학 교수님의 발언으로 국민적으로 큰 반향과 파장을 일으켰는데 혹시 그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게 국민의 참정권이지 않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예.

**○위원장 정청래** 이 국민의 참정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많이 분노하셨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대법원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 이후에 현직 판사들도 코트넷에 게시글을 쓰면서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판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통렬하게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을 비판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서보학**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통상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전합에 회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문제는 2020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상당히 진취적인 자세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정읍시장 사건입니까, 작년에 그 판결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교수님,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때도 그런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서보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영상자료를 보며)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6·3·3원칙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후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6·3·3원칙이 더 안 지켜졌다, 더 길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6·3·3이면 마지막 3은 3개월이지 3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36일, 그 짧은 기간에 해치우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예, 6·3·3원칙에 따르더라도 90일을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대선처럼

중요한 국가 대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선 전에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랬을까요? 생각되시는 것 있습니까?

○참고인 서보학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법부에 밀어닥칠 어떤 개혁 요구 이런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위원장 정청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서보학 예, 뭐 하여튼……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참고인 서보학 국민의 신임은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금 과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5월 1일 이 사법 쿠데타를 저는 법란(法亂)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서보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켜서 과연이 되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서보학 국민들의 분노도 크고 또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도 상당히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아시지요?

○참고인 서보학 예.

○위원장 정청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서보학 저는 예전부터 그 주장을 할 때 여차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서보학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 나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고인 서보학 이번 기회에 저는 대법원 개혁의 동력, 사법부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겸찰해체뿐만이 아니고 대법원 개혁, 사법개혁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4.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0)
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0)

○위원장 정청래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관장님들께 질의하지 않으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대체토론 종료 후 청문회 재개 시 우선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제가 오늘 청문회 때문에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처장님께서 이따가 청문회에 참석 안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월별 선고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선고 재판의 평균 재판기록물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대법원 선고 판결의 전원합의체 회부일부터 선고일까지의 기간 이런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간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5월 1일 날 대법원 판결 당시에 대법원에서 전자문서로 기록을 보셨다고 하셨다가 전자문서화가 10월부터 시작이어서 전자문서로 다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종이문서로 보셨다면 이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6만 8000페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복사를 하셨다면 A4용지를 얼마나 구매를 하셨는지 구입내역을,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시겠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오늘 오전 8시 반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요청드린 시간의 30분 전에 ‘청문회의 이 자료 요청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 내용이 법원조직법 65조 그다음에 국정감사법 8조, 국회법 이렇게 드시면서 낼 수 없다 하셨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사실은 합의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그냥 그동안 쭉 답변해 오셨던 자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청한 자료를

안 내시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대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질문의 길을 막겠다는 것인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증감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그런데 또 저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상 5일 전에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일 전에 소명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대법원은 이번 청문회에 비협조적으로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사법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법관들께서도 매우 굴욕적으로 모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청드린 이 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하신다면 증거인멸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보존을 하시고 이 특검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을 좀 옮겨 주세요. 저게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님께서 하신 판결문이거든요. 처장님 보시면 저기 ‘천대엽’이라고 서명하시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저렇게 판결문을 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주임판사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주심.

○박은정 위원 주심판사. 주심판사이고 나머지 대법관들도 주임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 서명과 날인을 한 것은 자기의 사건인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판사와 검사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5월 1일 저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가, 사실은 지금 무슨 답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예, 말씀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재판과 판사가 사회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인권 보장을 재판을 통해서 이루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과 또 사법부 독립을 통해서 법관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그 재판 결과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수사나 또 조사 등의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헌법 45조에 의해서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절대적인 면책이 주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판 과정에 또 재판 결론에 관계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재삼재사 재고해 주십사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런 말씀과 같은 경위로 저희들은 이번 청문회는,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착안하시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또 법원조직법이 보장하는 합의 과정 비공개라든지 법관의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 끝에 저희들은 이번에 불출석의견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오랜 숙고 끝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듣기로는, 청문회와 별도로 의안 자료로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했던 원칙대로 검토해서 제출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위원님 실에서도 그런 취지로, 의안 자료로서 요청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그 정확한 말씀을 제가 확인해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께서는 위법한 발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하 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오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법원조직법, 국회법, 이 법을 들이댔는데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예외다.’ 이런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출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서류제출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에서도 합헌이라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1항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장이 들이댄 헌법과 법률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처장, 지금 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 군사 관련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군사 관련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위원장 정청래 군사 관련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군사 관련은……

○위원장 정청래 군사 관련입니까?

○곽규택 위원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장난쳐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군사 관련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정청래 군사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군사 관련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희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말씀……

○위원장 정청래 외교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적인 관점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북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적인 관점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이 법들이 위헌이라는 뜻입니까?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예외입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대법관들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헌법 조항이 돼 있습니까? 국회증언감정법이 우리 대법관들께서 보실 때는 휴지 조각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회로서 이곳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다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증언감정법 자료제출 등의 법적인 조항에 따라서 다 제출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관은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초헌법적 기관입니까?

대법원장이 이런 법적인 것을 죽 댔길래 제가 기가 막혔어요. 언젠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법들에 의해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벼젓이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증언감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탄핵심판을 받았는데 위법하다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미 판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 가면 대법관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 날 것이 100%예요.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 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기표 위원님 토론하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오전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누가 저녁에 룸살롱 가든 저녁을 뭐 먹든 그게 위법하지 않으면 저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런데 아까 그 제보를 한……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할 때 상대 당 모 위원께서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의 의혹 제기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것인지 증거가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에 개입하고 그래서 대법원이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 당 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장소 특정도 안 되고 언제 누구랑 갔는지도 밝히지 않은 것처럼, 베네수엘라 운운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띄워 볼까요?

#### (영상자료를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위에 가린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개만 지금 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아주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럭셔리한 내부지요.

제보자가 여기를 함께 같이 갔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이 갔었고 사실 다른 사진들, 지귀연 부장이 거기 갔었다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제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 그 정도로 해서 사법부에서 적절히 감찰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요.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건 자기 돈 내고 소고기를 사먹건 그것은 도덕적으로야…… 사실 법관이 룸살롱 가는 것 저는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된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 데가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김기표 위원**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기 같이 갔던 사람이 이것을 왜 제보를 했느냐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 수괴 풀어 주는 것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시 같은 것도 제보된 사진에 의하면 저는 특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장님도 돌아가시면 본인 직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법원의, 사법부의 아주 큰일이고 하니 잘 살펴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더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아까 오전에 대법원장의 취재원 제보 영상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간 것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정청래 지금 지귀연 판사 묻고 있습니다, 지귀연 룸살롱 간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처장으로 우리 대법원장님을 모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인품이나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위원장 정청래 그 얘기는 됐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부장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따로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만약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 룸살롱 가지 마시오’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이야기 할 정도가 아니라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이런 품위 손상,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것이 판결 개입은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것은 일단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보를 받아서 이것은 즉각 감찰하고 필요하다면 징계조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렇게 부적절한 위법한 행동을 한 지귀연 판사라면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이것이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되면 감찰, 윤리위 징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서 얘기하면 어떠해요, 사실이라는 전제가 돼야지.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그것은 지금 천대엽 처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별씨 사진이 나갔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랬을 때 법원이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입장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와주는 차원이에요.

○곽규택 위원 저 사진이 무슨 빈방 사진 찍어 놓고…… 더 확실한 사진 내놔 봐요, 확실한 사진으로.

○위원장 정청래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것이 사실이면 어쨌든 조사하고 감찰하고 윤리위 넘겨서 징계 같은 것도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러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상상도 못 하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일어나느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의회를 맘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느냐? 당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이재명이 본인이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돼서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 국회를 망치더니 이제는 나라 전체를 그냥 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윤호중 의원님 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

○박준태 위원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님 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성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하셨고요. 지금 선대본부장 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법부의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해 주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하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을 존중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발언은요 한마디로 사법부를 이재명 밭아래 무릎 끓리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재판까지 연기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 존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들 중에서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때요—2004년입니다—대법관이 20명이었는데 32명으로 늘렸습니다. 물론 12명 늘리면서 전부 다 자기편으로 채워 놨습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4만 5000건 판결을 했는데 이 중에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1건도 없었다 이런 분석,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보고 지금 대법관 늘리는 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미 선진화된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데 후진국 모델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입법, 사법, 경제 전부 다 베네수엘라 그거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국회를 열어 가지고 대법관들을 국회로 부르고 불출석했다고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법안 심사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입법, 듣기 좋은 얘기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요 김문수 뽑아 가지고 국민한테 권력을 돌려주느냐 아니면 이재명한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국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착한 대통령 뽑느냐, 자기 위해 법까지 다 바꾸는 그런 나쁜 대통령 뽑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테요. 이성윤 위원님 아까 청문회 5분을 쓰셨고 대체토론 5분 지금 하시는 거고요. 이따 청문회 때 첫 번째 순서에는 5분 못 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성윤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이성윤 위원님 대체토론 5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오전에도 지귀연 부장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점심 먹으면서 들어 보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자료나 제보는 접수된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더 자료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귀연 부장이 휴가를 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제가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휴가 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서울고등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법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에게 답을 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요? 저는 재판이 두 번이나 미뤄지고 재판장이 2주나 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사생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루하루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거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생활이라 말씀 못 한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사생활인지.

이영섭 대법원장이 사직을 할 때—81년 4월이지요—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들려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영섭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면서 바로 ‘회한과 오욕의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법부를 뭐라고 했냐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관청 부(府)’ 자를 쓴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 부(部)’ 자를 썼어요. 아십니까? 이영섭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한자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당시 김재규 재판 관련해서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고 단순 살인죄라고 대법관들이 의견을 내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잖아요. 그게 바로 ‘오욕과 회한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사법부를 ‘관청 부’ 자가 아니라 ‘부분 부’ 자를 썼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다음에 김덕주 대법원장 사퇴한 사유 알고 계시지요? 왜 사퇴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산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9억 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사퇴를 했어요. 또 김용철 전 대법원장 사퇴한 거 알고 계시지요? 87년에 노태우 정권에서 임명을 합니다. 전에 전두환 때 임명받은 대법원장을 다시 재임명하자 짚은 법관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찌 이런 분을 우리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느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용철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 부덕의 소치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전직 대법원장 세 분이 항거하면서 사법권의 독립,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서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판결을 했어요.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이걸 파기환송해 가지고 사법 쿠데타란 말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대법원 소속 그리고 법원 소속 판사들이 내부에서조차 ‘이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런 비아냥을 듣습니다. 적어도 김덕주, 김용철, 이영섭 대법원장 시절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처음 나온 얘깁니다, ‘이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처장님, 이런 말씀 처음 들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송구스럽지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성윤 위원 ‘이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 이런 말을 처음 들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이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이성윤 위원 그러면 김덕주, 김용철 그리고 이영섭 전 대법원장님은 뭡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직을 해 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희대 대법원장님은 스스로 알아서 나서서 자진해서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다 깎아 먹고 더군다나 내부에서 조차 이렇게 물러나라고, ‘이러고도 당신들이 대법관이냐’는 비아냥을 들고도, 내부의 신뢰를 잃는 판결을 해 놓고도 왜 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신뢰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국민들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국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 세 줄짜리, 다섯 줄짜리 간단한 불출석사유서 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한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님, 국민들은 정말 대법원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고 대법원은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아무리 대법관이고 판사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곽규택 위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유상범 위원 뭘 잘못했다 그래?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잘했다고만 얘기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제가 말을 하면 말 좀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버스를 탈 때나 아니면 기차, 지하철을 탈 때나 줄을 서면 새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안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재판할 건 수가 120건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법을 새치기해 가지고 백 이십몇 번째 있는 거를 위로 올려 가지고, 새치기 해 가지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법 새치기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우리 법사위에서 맨날 있는 게 새치기잖아. 숙려기간 도과 안 돼도 맨날 올려놓고서 뭘 그거 가지고 남한테 뭐라고 그래?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 주신 것처럼 법사위에서도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도 여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법원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도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사안의 중요성, 시급성에 따라서 순서를 좀 달리하고……

○위원장 정청래 알겠어요. 그러면 6·3·3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다른 거는 3개 월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36일 합니까?

○유상범 위원 3개월 안에 하라는 거지 누가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3개월 내예요, 내!

○**박범계 위원** 보통 따겼어야지 말이지, 보통!

○**유상범 위원** 항소심이 얼마나 엉터리면 그렇게 했겠어?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3개월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그렇게 했나 보다’ 하지요. 계속 6·3·3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대법원장 스스로 얘기했던 6·3·3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꽉 뽑아 위로 딱 올려 가지고 새치기 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 그러면 지금 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판사들 여러 명이 코트넷에 썼잖아요. 그러면 그 판사들이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까? 같은 판사들이잖아요. 입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행정처장이라서 곤궁한 입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국민 상식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도. 그러면 국민적인 상식선에서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질의시간을 좀 활용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백이십몇 번째에 판결할 것을 끌어다가 90일도 안 지키고 3개월도 안 지키고 36일 만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 물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정청래** 예,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른 부분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6·3·3 이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왜냐하면 저는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까—그렇지만 이른바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서 만약에 특정인이 당선되면 그 후에는 이제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헌법 교과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재판은 결국 한다고 하면 그전에 해야만 판사가 재판을 기피하지 않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것으로 저는 추측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유상범 위원** 들어 보세요. 아이고……

○**위원장 정청래** 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먼요?

○**곽규택 위원** 날렸어야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뜻으로 들려요.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지금 본심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전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위원장 정청래**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낭중지추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엉뚱한 걸 들이대.

○**위원장 정청래** 송곳은 나오게 돼 있어요.

○**박범계 위원**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어, 낭중지추는.

○**곽규택 위원**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아이고, 만주변호사. 마음에 안 듣다고 말 잘라 가지고 다 안 듣고 말이야.

○**박범계 위원** 조용히 좀 해라, 좀!

○**유상범 위원** 제대로 하면 내가 조용히 하지!

○**박범계 위원** 중얼중얼 좀 그만하고!

○**유상범 위원** 뭘 중얼중얼해?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의정활동 잘하셔서 3선, 4선 돼서 법사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오늘 처음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자리였는데, 물론 불출석해서 사실상의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의 전원합의체를 이루었던 대법관들에 대해서 국회에 불러 가지고 망신을 주겠다 하는 그 취지지요. 그 취지인데 지금 그것을 내놓고 말을 못 하니까 왜 이렇게 재판을 빨리했느냐, 이게 절차 위반 아니냐. 그리고 대법관들이 그 두꺼운 기록을 보고 한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를 트집을 잡고 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에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갑자기 어디 들고 나온 원칙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스스로 공직선거법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빨리 판단하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께서 순번이 뒤로 있는 사건이지만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판결이 먼저 나와야 될 사건에 대해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신속한 재판을 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께 한 국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 대법원을 통해서 국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만 쪽 운운하면서 그 기록을 어떻게 삼십 며칠 만에 보느냐.....

법원행정처장님,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의 판결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결국 사실관계는 2심이 인정한,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6만 쪽 기록 중에,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느냐 이런 사건인데 기록이 6만 쪽이 됐다 하는 것은 뻔합니다. 같은 주장을 피고인 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무죄라고 다투면서 허황된 자료들을 잔뜩 낸 거예요. 그게 수사기록에도 있을 것이고 1심 기록에도 있을 것이고 2심 기록에도 당연히 붙어 있겠지요. 똑같은 주장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게 6만 페이지 중에서

한 5만 페이지 될 거예요. 변호사 오래 해 보고 검사 오래 해 본 사람은 알아요. 법원에서 오신 분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또 그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기록 그것도 상당 부분 되겠지요.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과 몇백 페이지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죄가 정해진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아예 그 법을 바꿔서, ‘행위’를 들어내서 공직선거법상의 유죄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딱 멈춰 놓고 법을 바꿔 가지고 면소를 만들려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을 내놨고요.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옥죄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대법원의 최고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100명씩이나 늘리고 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법원행정처장님이 보시기에는 대법원의 위상을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하위기구로 만드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릴까요?

○곽규택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그 사건 심리에는 관여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다만 이 사건의 전합 판결문만 보면 이른바 해석기준 관련해서 분절적 해석기준 내지는 종합적 해석기준에 관한 법리에 관한 그런 논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령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모두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치밀하게 또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법관들의 경험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처장님, 대법원에서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상고심처럼 진행됐던 재판의 전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건마다 다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회대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대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그 태도가 맞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정보화실장이나 대법원 비서실장도 오늘 안 나오겠다고 한 것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분들이 판사 신분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균택 위원 그렇지만 행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행정관의 권한은 행사하되 행정관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처신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판사 신분이기 때문에 나오기 쉽다고 한다면 앞으로 비서실장이나 행정처 보직은 법관이 아닌 일반행정직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문회에서 여쭤보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판의 어떤 과정, 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그렇더라도 행정관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나와서 답을 소극적으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나오긴 나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정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님 말씀……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문서로 복사해 준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전자문서라도 열람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접속기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요구했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기간에 관한 일반통계 이것마저도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거부했는데 이게 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통계도 못 주는 조직이 됐습니까, 법원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판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기록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봤느냐라는—종이기록이나 전자기록이나 마찬가지니까—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또 기록 검토를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고 합의를 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합의의 비공개에 해당되고……

○박균택 위원 그래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통계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늘 청문회 관련한 그런 자료로 요청을 받아서 아마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박균택 위원 어쨌든 그런 객관적인 통계나 물증에 해당하는 자료마저도 주지 못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을 똑같이 닮아 가는 모습인 것 같아

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과거에 2013년 전후로 대구지방법원장을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균택 위원 그때 신년 하례식에서 축사를 하는 내용을 들었던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보수적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그분의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태도가 이번 사건에 반영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던 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제일 먼저 밝힌 분이 대법원장님이고 또한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서울고등 판사를 지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그런 결단, 조치를 취한 것도 그분입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례 없는 판결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릴까요?

○박균택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국의 법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특정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을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조사 또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하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리에 대항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나머지 질문 사항들이 좀 있는데 혹시 청문회 때 좀 남아 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을 이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안 계시네요.

박범계 위원님.

○유상범 위원 준비 안 됐어요?

○박범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먼저 하세요.

○유상범 위원 오늘 위원장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빠른 선고를 ‘새치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치 이것을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로 대법원에서 이 사건만 먼저 판결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새치기 사건…… 처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숙려기간 도과되지 않고 민주당이 꼭 처리해야 될 법안들, 수많은 1소위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앞당겨 가지고 계속 법안 처리하는 걸 다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많은 새치기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입선출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재명의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정말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것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로 신속히 배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근거 규정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하시고 그것에 근거한 것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그렇게 법적 근거를 다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위법성은 없다는 것은 자신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재명의 공선법 위반 혀위사실유포가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을 유죄로 선고했느냐. 누구도 그 얘기는 안 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것은 건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건드리면 외려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법원 판결을 아예 부정하는 거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어요?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선고했다든지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느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이 마치 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하면서 사실 법원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지요. 그와 함께 지금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 거기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거칠고 폭압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을 합니다,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이것이 이 판결을 보고 있는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혀위사실공표에서 행위의 혀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는 그 법안을 행안위에서도 일방 통과시켰고 오늘 여기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면서 유죄 확정이 될 것이 명확해지자 법으로써 그 판결의 효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만일 이 법안이 실행되면 결국은 어떻게 처리되지요? 결국 이재명의 혀위사실공표 행위는 면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행위시법을 적용하나 신법에서 형이 감경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도 무력화시키는 거고 또

입법을 통해서 이재명이 완전히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재명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걸로 선고했다며 법원을 호도하고 있는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바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의회에서의 모습이 수십 년 뒤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명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52조 2항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사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59조에 의해서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것은 의결로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백이십몇 번째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을 첫 번째로 올려서 한 법적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대법원 심리절차 내규 등에 따르면……

**○위원장 정청래** 내규 몇 조 몇 항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 법적 근거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인 근거 몇 조 몇 항인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나중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 정청래** 왜 나중에 얘기합니까? 지금 왜 얘기 못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지요. 저는 국회법 몇 조 몇 항이라고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법원행정처장은 저보다 법에 대해서는 백배를 더 아시는 분이 법적인 근거 조항을 말을 못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현장에서 바로 제가 혹시라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지금 빨리 뒤에 있는 분들 협조를 구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사이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청래**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이와 같이 내규나 예규 등에 그런 근거를 두고 있고 또 한 모든 법관들이……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들어야 그다음 말을 하는 것이 맞지요.

○유상범 위원 답을 듣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한 부분은 재판장의 권한 혹은……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인지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처럼 저희들도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여러 대법관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께서 그 조항 몇 조 몇 항을 지금 알지 못하고 즉석에서 답변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어서 그 조항을 외우지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정청래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건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따라서……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그 말씀은 오전 내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대법원장이 백이십몇 번째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상고심 판결을 맨 앞으로 끄집어내서 했던 그 법적인 근거 조항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냐 제가 묻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다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뒤에 접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합을 위해서 앞당겨서 진행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저희들 종종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참 답답하십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 들었고 알고 있고요. 제가 그 근거 조항, 무슨 법 몇 조 몇 항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시지요.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의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늘이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하늘입니다.

○박범계 위원 국민들이 두 쪽이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박범계 위원 대법관이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행정처장을 하기 전에는 대법관으로 심리에 관여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행정처장이 끝나면 심리에 관여할 재판부로 돌아가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끝나면 돌아갑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처장을 비교적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특히 형사법의 대가로 알고 있는데 하늘이 두 쪽 나는, 즉 국민이 두 쪽 나는 그 신념, 확신 그것은 무엇에서 기인합니까? 바로 그 점이 이번 대법원 전합체에 투영이 됐다면 그것은 오류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신 말씀 중의 내용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대법원 전합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6월 3일 이후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낙선이 되면 그냥 국회의원일 뿐이에요. 당선될 가능성성이 높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는 피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거운동 기간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신 존중한다고 하는 하급심, 이재명 후보의 계류 중인 하급심 재판부가 족족 다 기일 변경을 하고 심지어 기일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기일을 수정한 재판부도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하급심 재판부가 헌법상의 116조, 대통령후보로서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기일 변경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것을 피한 것은 뭐냐? 참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세 번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굳이 5월 9일, 5월 8일 날 해도 되는데 5월 1일로 당겼어요. 왜? 날릴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 후보조차도 없는 국민의힘 단독 후보만 있는 대선은 그것은 차마 안 되겠다 싶어서 후보 변경, 상실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할 후보 교체 시간을 주려고 5월 1일로 당긴 거예요. 이게 의도성입니다. 이거친 숨을 쉬어 가면서, 거칠기가 이를 데 없는 이 단호함이 이번 대법 전합체 10명의 대법관들의 소위 말씀하시는 합의의 과정이니, 지켜져야 될 사법부 독립이니 그런 미사여구로 장식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을 숨길 수 있어요? 놀라고 있잖아요. 하급심 재판장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처장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믿는다라는 대법원장에 대한 그 확신, 그 확신을 대법관들이 이유 없이 저마다의 확신으로 포장한다면 이분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고 헌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중원이 필요해요. 저도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확신에 차서 대법관 중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헌법에 대법관의 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말씀을 하세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없어요. 입법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 역사에서 헌법 규정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언제입니까? 제3공화국 헌법에서 4공화국 유신헌법까지 있었습니다. 아

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이 집권해 가지고 국가보위법과 비상기구에서 소위 비상국무회의를 가장해 가지고 헌법 조항에 있는 이 대법관의 수를 입법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5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날로 커졌는데 대법관의 수는 14명으로 고정된 채 3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를 침해하는 이 거친 숨소리의 결단을 포장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법원 출신이라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처장께서 한번 합당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께서 예전에 긴급조치 등의 사건을 재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또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헌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박지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가장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 봤지만 이번처럼 사법부가, 대법원이 위원들로부터 비난받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 당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우리는 사법부의 개혁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6일 예정된 법관대표자회의를 주시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법관들이 국민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론을 낸다고 하면 다시 한번 들끓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한다'가 48.6%입니다. '비공감' 46.2%입니다. 48 대 46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명예와 존경의 대상인 대법원장이 사퇴가 더 많다 하는 것은 법관대표자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정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 관련해서 이와 같이 책임 추궁 내지는 신변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은 모든 법관들이 정말로 사법부 독립하에서 맡은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저와 많은 법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으로 끌고 가서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공동위원장입니다. 오늘 아침 위원장 회의에서 하신 발언록이 너무나 감명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제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도 함께 참조하세요.

내란 수괴를 불구속 재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떻게 내란 수괴를 불구속 재

판하느냐. 지금 현재 윤석열 피고인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구속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현역 군인들의 재판은 비공개 재판하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판결된 내용을 무엇을 숨기려고 하느냐. 재판부가 윤석열의 심리를 12월까지 마치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럴 사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배 법조인으로서 ‘후배 법조인들이 공부 좀 해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절규를 토로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 윤석열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구속 기소할 의향은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재판부에서는 발부할 것이고 또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을 시킬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소된 이후에 피고인 신병에 대한 권한은 재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처장님, 재판부에서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차관님 얘기 들으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일선 법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대 대법원장을 48%가 사퇴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꾸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화내요. 그래서 26일 법관대표자회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면 5분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법원 판결은 공정해야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또 공정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공정의 외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면 불공정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겠지요? 평균에 가까우면 공정해 보인다고 인식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305일이었습니다. 10년간 그렇습니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직선거법 상고심 처리 소요기간은 8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평균 260일이 걸렸습니다. 아니, 본인이 6·3·3 계속 강조하면서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보다 훨씬 많이 기간이 늘어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확정된 26명의 상고심 선고에 걸린 평균 기간은 119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상고심이 유독 단 34일이에요.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보면 7배가 빨랐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상고심 처리기간이 260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만 34일이에요.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7배가 빨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대선에 개입하려고 검은 의도를 가지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법란을 일으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대의 난을 일으켰다. 그러니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뇌까지 지배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 기록을 다 읽어 봤느냐? 챗GPT에 물어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으면 917시간이 걸린답니다. 챗GPT가 답변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읽으면 38일 걸린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읽으면 한 15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읽어 봤다’ 이런 얘기는 명확하게 안 해요. ‘전자스캔 떠 가지고 다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국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겠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왜 상고심 처리기간을 260일이나 끌었을까요? 참 이상해요.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입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 쪽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두 쪽이 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당장 사퇴해라.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두 쪽이 났어요. 판사들이 코트넷에 글 써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리고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나. 다 물러가라’ 이렇게 현직 판사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법원장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법원행정처장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저의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고, 아니라고 지금 말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전부터, 오늘 오전 또 조금 전까지 이번 재판에 관해서 제가 추측하는…… 왜냐하면 저는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도 제 추측에 의한 것이라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 말, 제 주장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제 경험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률심이자 상고심으로서 쟁점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록 검토 그리고 여러 연구관들을 활용한 법리적인 쟁점 검토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절적 혹은 종합적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 쟁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토를,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 올리신 분들은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

고 판결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 안 하신 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런 부분들의 규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선법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하여야 한다’라고 27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합 내규 2조 1항 단서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바로 전합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기일의 진행, 변경, 선고 지정 등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문제이고 이것은 민사·형사 또 행정, 모든 소송절차의 공통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순서와 달리 합리적인 필요가 있으면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그것이 일선 법원이든 혹은 대법원이든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 시급한 사건 또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은 순서와 달리 우선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운운하시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왜 이 법을 안 지키고 평균 260일이나 걸렸습니까? 왜 다른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왜 유독 이재명 대표 건만 그 조항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냐, 이것이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지금 염중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은 260일 평균 소요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까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공직선거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다른 분들은, 수백 건 수십 건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을 다 위반했다 지금 그것을 자백·실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속이면 두 번 속여야 되고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 거짓말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궁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는 데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회부하지 말고 그냥 폐기해 버리세요.

○위원장 정청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를 하려고 해도 출석을 하셔서 반대를 하셔야지. 세 분만 지금 반대하시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처장님, 김정원 처장님, 김석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 6. 조회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15시18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청문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문회 신문시간은 5분으로 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일사부재석, 자리에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박희승 위원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이십니까, 현재?

○참고인 이성민 예.

○박희승 위원 문제된 대법원 과기환송 판결 이후 바로 이튿날 노조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셨지요? 어떤 취지였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저희들이 올린 글 제목이 '희대의 재판거래'라는 내용으로 근래에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9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아까 충분히…… 이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계실 것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판례가 박영재 대법관이 선고한 판결인데 다시 동일한 박영재 대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그 판결 이유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판 거래 없이 가능하느냐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제기한 것이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박희승 위원 이 성명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빠른 선고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런 사례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제가 조금 정제된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내용을 적어 왔는데요. 사법부

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외의 구성원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2심 판결 내용이 바뀌는 대법원의 내용이라면 기록을 보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유죄고 무죄고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2심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박희승 위원 판결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네요. 화요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라고 하는 현수막이 다 게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위반하고 사법부 신뢰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1인 시위를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 앞에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요?

○박희승 위원 그런데 지금 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지요, 26일예?

○참고인 이성민 예,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법관회의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그래서 법원노동조합 분위기하고 법관들 분위기는 조금 온도 차가 있나요? 그건 어떻습니까, 느끼기애?

○참고인 이성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맞겠네요. 법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으로 근무했던 곳이 대구지방법원이에요. 대구지방법원 직원들을 좀 만나 봤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인격 면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좋은 것하고 판결하는 것하고는 같이 갈 수는 없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또 일반적 공무원하고 판사들하고 약간의 온도 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준일 교수님!

○참고인 이준일 예.

○박희승 위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준일 재판의 신뢰는 공정성과 신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공정성이라는 이름을 달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 전에 또 정읍시장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절차도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도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바꾸려면 충분한 숙의기간이 필요하고 더구나 저도 작년에 혀위사실공표죄, 유포죄 폐지법안을 내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 정도 되면 면소 판결도 될 수 있는 대상이어서 국회에 사실조회를 하든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지금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

까, 우리 교수님은?

○**참고인 이준일** 일단 선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실보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영역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지 법관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승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5 플러스 1로 하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이준일 교수님, 질문드릴게요.

사법부 독립이 사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헌법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사실 사법의 독립성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헌법의 기본 가치는 법치주의 이외에도 민주주의나 기타 중요한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의 독립성을 포함한 법치주의가 항상 우선되어야 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제다가 모든 국가권력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준일**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사법부 독립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참고인 이준일** 맞습니다. 사법부는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정확히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법부 독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진상 조사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변환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헌법소원 제도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헌법재판소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의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재판했다’, ‘기록 다 안 봐도 된다’ 이걸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이준일** 재판은 당연히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정확한 법률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나 법률문제 쟁점에 대한 이해 없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

는 것은 그것은 법관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무속인의 판단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국가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우리가 요구하면서, 다 좋은데 기록을 안 보고 재판을 해도 괜찮다라는 걸 용인하는 것은 그 전체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 자체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 이준일** 헌법이 규정하는, 103조의 규정도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당연히 구속이 되고 그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완전 무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독립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도 볼 수 있게 부족한 대법관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오늘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증인들이 다 안 나왔어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하면 우리 국민들 다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법에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도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소환됐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 위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준일**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특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법적 규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지금 청문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청문회가 된 것 같긴 한데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지금 법원의 태도들은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 제가 어제 발의한 법이긴 한데 사법개혁과 사법신뢰를 위해서 법대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하는 법대를 국민의 눈높이로 낮춰서 동등하게 대등한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산물이고 법대를 위에 높이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받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서 이런 법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으신가요?

○**참고인 이준일** 법의 권위 혹은 법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판결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법관의 자리, 위치, 물리적 공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이성민 위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대법원에서 기록 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록이라는 게 법원에서 만드는 공판기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하는 증거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판기록은 전자문서화를 시켰을 것 같은 한데 증거기록은 아직 전자문서화시키는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그리고 대법원 기록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전자화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이성민 예.

○김용민 위원 그래서 대법관들이 이 문서를 기록을 다 받아 봤다 그리고 다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9일 만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제가 법원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민사·형사재판부에서 일은 해 보지 않아서 지인들을 통해서 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본은 원본 기록을 보는 게 원칙이에요. 원본 기록을 보는 게 원칙이고 단지 과에서 해 주는 거는 판결이라든지 상고이유서 같은 것은 출력을 해 줘요. 그리고 내용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록을 다 출력해서 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이야기가 논쟁의 쟁점이 됐는데요. 전자화했다 칩시다. 저도 경매업무를 해 봤지만 이 전자시스템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록이라는 게 넘기다 보면 앞에 것을 다시 상기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면 화면을 다시 앞으로 돌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부전지를 붙여 가면서 봐요. 이 많은 페이지를 읽으면서 모두 다 기억에 저장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오늘 국회에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증인·참고인들은 이 국회증감법 2조를 충실히 따라 주신 준법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그에 반해서 법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증인들,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한번 법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 증감법 2조를 위반한 증인들 명단입니다. 증인 조희대, 증인 오석준, 증인 신숙희, 증인 엄상필, 증인 서경환, 증인 권영준, 증인 노경필, 증인 박영재, 증인 이숙연, 증인 마용주, 증인 이홍구, 증인 오경미, 이분들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들입니다. 이분들이 국회 증감법 2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서석호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 되시는 것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되시는 거지요?

○증인 서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동기들 사이에서는 서석호 변호사님,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제가 독수리 5인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증인 서석호 학창 시절에 그냥 5인방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증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독수리 5인방이 아니고 그냥 5인방입니까?

○증인 서석호 예, 독수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신 것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북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한덕수 전 총리와는 같은 로펌 출신으로서 잘 알고 지내시는 것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같은 로펌에 있지만 모르고 지내십니까?

○증인 서석호 예, 한번도 뵐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한번도 뵐 적이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까?

○증인 서석호 얼굴은 화면에서 본 거는 있지만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은 청문회 증인으로 5월 7일 의결되고 나서 5월 8일 날 소속 로펌에서 탈퇴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왜 사퇴를 하셨습니까?

○증인 서석호 저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그 전주, 2일인가 3일부터 유포가 되면서 저한테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막 엄청나게 많이 벤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걱정하던 차에 5월 7일로 기억하는데 5월 7일에 법사위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으려니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서석호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박균택 위원 그러면 본인의 판단으로 나오셨다 이 말씀이네요?

○**증인 서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친분이 있으시지요?

○**증인 서석호** 전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 선배인데……

○**증인 서석호** 선배인 것은 맞는데 한 번도 뵙 적이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법조계 선배인데도 모르고 지내셨습니까?

○**증인 서석호** 모르고 지낸다기보다도 저는 고등학교를 추첨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위 뺑뺑이 세대고요. 그분은 4년 위니까 선발 집단인데 또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동문회를 하더라도 소위 추첨 세대하고 선발 세대가 같은 법조인이라도 따로 하게 돼서 저는 동문회에서도 한 번도 뵙 적이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세간에서는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소문이 그러면……

○**증인 서석호** 그것은 완전히…… 전혀 한 번도 뵙 적이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왜 그 소문이 난 것일까요?

○**증인 서석호** 그래서 저도 과연 누가 이런 허위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질문은 아니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준일 교수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사법의 독립이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사법의 독립을 얘기하려면 군사정권 시절에 강조를 하고 추구했어야 맞는 것이지 21세기에 와서 사법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그런 논리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준일** 지금은 이미 사법부가 상당히 우월한 엘리트 의식에 싸여 있기 때문에 독립성보다는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헌법학계에 계시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들어오면서 사법의 민주성, 사법의 책임성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법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법의 독립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견해에 찬동을 하십니까?

○**참고인 이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이준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는 극비사항입니까? 극비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준일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성민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이성민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는, 기록이 하급심에서 대법원에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재판연구관의 보고서와 전자화된 중요한 문서들은 출력해서 복사를 해서 줍니다. 중요한 문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경태 위원 현재 대법원에 기준의 재판연구관들이 10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재판연구관이 연구보고서를 할 때, 물론 신건 연구관과 심층 연구관 이렇게 구분도 되고 연구관의 조가 상사조, 민사조, 근로조, 형사조, 조세조, 헌법행정조 등이 있는데 그 조마다 연구보고서를 써서 인용이면 인용 의견으로 기각이면 기각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연구관들이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 공유된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특정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연구관들 10명을 별동대로 구성해서 이 보고서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별도로 대법관들에게 제출되고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출속 재판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비밀리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성민 대법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진 이야기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록이……

○장경태 위원 저도 내부 제보라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인 이성민 그분이 이야기한 거라서 이 워딩을 그대로 좀 해 주고 싶어서요.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해서 이걸 소부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됐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부에서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당겨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 실무진의 이야기입니다.

○장경태 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 사건 배당을 소부에 회부하고 나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시에 소부의 요청사항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4월 22일 날 당일에 사건 배당되고 당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당일에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출속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건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정 사상 최초라는 겁니다. 유일한 사건이고.

○참고인 이성민 맞습니다. 이런 사건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도 아직, 작성해서 보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심리가 됩니까? 대법관들이 무슨 사건 내용, 사건기록을 지금 다, 그것 6만 장이라고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배당받기 전에는 관리재판부에서 하잖아요? 배당을 받아야 심리 권한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속 재판관이 돼야지만?

그런데 재판관이 배당받고 나서 심리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 날, 배당받은 당일 날 심리가 가능합니까?

○참고인 이성민 물론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체 대법관들은 이 기록 내용을 전자확인, 뷰어로는 다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다 있다는 거지요.

○장경태 위원 고법에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전자기록도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전산화 다 안 돼서.

○참고인 이성민 그렇지요.

○장경태 위원 이렇게 사건기록이 방대한 사건 그리고 1심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전자화되어 있지만 실제 공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되거나 새롭게 채택된 이 과정까지는 다 전자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것은. 이것 만약에 대법원 수사하면 저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식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질 거다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일 교수님, 지금 미국의 50개 주에는 모두 다 대법원이 설치되어 있지요?

○참고인 이준일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오클라호마주나 텍사스주는 2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부·형사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0여 명 있는데 지금 제가 단순 계산해 봐도 지방법원 법관 1인당 재판 수가 2500여 건, 고등법원은 200여 건, 대법관은 1인당 4500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건씩 해도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심지어 사법연감에도 지금 대법관 1명당 3300건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12명이 판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법관 12명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100명이 판결하는 나라가 이게 삼심제, 상고법원이 아니라……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장경태 위원 상고법원이 아니라 이것은 상고배심원이다, 상고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다, 소위 재판권이 없는 연구관들 100명이 보고서 써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12명이 마치 배심원처럼 선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3심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아주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가치면 지방법원에도 전원합의체 둬야 되고 고등법원에도 전원합의체 둬야지 왜 대법원에만 둔 것이며, 그러면 독일에는 30여 개의 부가 있습니다, 형사·민사·행정·헌법 등의 모든, 물론 우리나라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독일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각 부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꼭 지고지순한 게 아니라면 각 부가 설치돼서 제대로 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준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독일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헤아려 보니까 민사부가 14개가 있고 형사부가 6개가 있었습니다. 총 20개이고 각 부에 평균 8명이 있기 때문에 기본 160명의 대법관이 있고 그 외 기타부라고 해서 또 20여 명이 있고 그 밖에도 4개의 또 최고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400명에 가까운 대법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대법관 플러스 대법

원 연구관을 포함해도 그 숫자에 미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성명을 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러면서 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참고인 이성민 예, 현수막 게첩을 포함해서요.

○위원장 정청래 현수막도 게첩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려면 지금 모든 법원 앞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참고인 이성민 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체……

○위원장 정청래 이번 주 화요일부터요?

○참고인 이성민 이번 주 화요일부터요.

○위원장 정청래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참고인 이성민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으로는 종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정청래 언제요?

○참고인 이성민 대선 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모든 법원의 법원가족들이 플래 카드 붙이고 또 모든 법원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고민이 깊어서 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그것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것을 각오하고?

○참고인 이성민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원가족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그렇게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법부가 대법관 몇 명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겠습니까? 그 밑에는 우리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사법부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들을 해 온 겁니다. 법관을 포함한 일반 구성원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법부 구성원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 판결이,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이 대법관 혼자의 판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표현을 국민에 대한 신임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신문하세요.

○**박은정 위원** 이성민 본부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번 성명 발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을 따르지 않고 임명권자인 윤석열을 따랐다’ 그리고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명 발표를 하셨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이 법원, 이 사법부는 지금 법원 구성원들,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성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는 법원공무원으로서 혹은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좋은 말씀입니다.

○**박은정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대선개입 사법정치 판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명서도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번에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 대법관들이 저렇게 있고. 20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셨으면 많이 보셨으니까 저 판결문 말미에, 조희대 다음의 줄에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거지요, 저 판결문은?

○**참고인 이성민** 그렇지요. 서명과……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지요.

그러면 저 판결문에 있는 저 12명은 저 판결의 주임판사들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이성민** 예, 그렇지요.

○**박은정 위원**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번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당시에 서울고법에서 기록이 왔고 그것을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대법원은 기록을 다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기록을 도대체 저 대법관들 12명이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이성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제가 대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니까 업무 담당을 예전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본 기록을 보는 게, 종이기록을 보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과에서 기존에 있던 판결이라든지 상고이유서는 출력을 해서 주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록들을 갖다가 모두 출력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은정 위원** 잠시만요. 저 기록이 6만 8000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기록을 다 복사해서 대법관한테 줬을 리는 만무하네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이네요?

○**참고인 이성민** 아니면 한 1년 주면 가능하지요.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 기록 6만 8000페이지를 12명에게 복사해서 줬을 리는 만무하고 스캔해서 갔을 리도 만무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참고인 이성민 예, 그렇지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저 12명의 대법관들은 저 기록을 안 봤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지금 논리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그것은 헌법상 권리예요, 기본권이고—그러면 나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재판인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지 않고, 내 인생이 걸린 기록을 안 보고 그동안 판결을 해 왔다는 결론이네요, 본부장님?

○참고인 이성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2025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결과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결론에 다다르는 절차적인 과정적인 부분 이것은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법규화돼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과정적으로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판결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데서 대법관들이 저 높은 법대에 앉아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사건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동안 판결을 해 왔다,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 판결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대법관들은 주임판사들이에요. 전국의 모든 검사 모든 판사들은, 주임판사·주임검사들은 기록을 보고서 공소장을 쓰고 판결문을 써야 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공소장을 쓰거나 판결문을 쓰는 판사는 없어요. 다만 검사장이나 부장이나 차장은 주임검사가 아니에요. 고법원장은 주임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안 봐도 보고서만 보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저 법관들은 저 사건의 주임판사이기 때문에 기록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면 이 대법관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기록을 볼 수 없었다면 대법관을 늘리자는 것이 이번 법원조직법을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이성민 본부장님, 저를 보실까요?

○참고인 이성민 예.

○김기표 위원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 후에 실제 법원 안의 식구들 그러니까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법원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것 아닙니까, 식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모여서? 대체로 어떤 기조인가요?

○참고인 이성민 현장에 계시는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법원공무원으로 있어 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냐면 왜 좀 빨리 안 해 주냐, 심지어는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신

랑하고 법적인 관계를 빨리 마무리 좀 시켜 줘라, 두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왜……

○김기표 위원 보통 빨리해 달라는 게 민원이지요?

○참고인 이성민 그렇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빨리했어요, 대법원 사건을.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김기표 위원 이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참고인 이성민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김기표 위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네요, 법원에서?

○참고인 이성민 그러면 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내 사건 빨리 처리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김기표 위원 왜 내 사건은 빨리 처리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니는 건가요?

○참고인 이성민 그리고 그것 플러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 줘도 믿지를 못해요.

○김기표 위원 아, 이제 믿지 않는군요.

○참고인 이성민 규정상 이렇다 이것을 못 믿는다고요.

○김기표 위원 그러면 법원 내부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공무원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참고인 이성민 온도 차이가 좀 있기도 하지요.

○김기표 위원 각자의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 온도 차이가 좀 있나요?

○참고인 이성민 예, 정치적인 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 의견은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앓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다.

○김기표 위원 정치적인 지향과는 별개로 이런 상황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다는 얘기네요.

○참고인 이성민 그거하고, 정치적으로 뭐 여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정치적 이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PPT 좀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국민들한테 대법원이 이렇게도 빨리 선고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외가 되지 않고…… 좋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대법원.

자, 보실까요? 3월 26일 날 항소심 무죄가 났어요. 검찰이 바로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 그 항소심에서 대법원에 소송기록이 송부됩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상고되고 다음날 기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 적 있어요?

○참고인 이성민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실무진이 움직여야 되는데……

○김기표 위원 실무진이 다 도장 받고 증인신문조서, 증인 녹취록 도장 받고 이거 다 하려면 사실상 한 1~2주 걸리잖아요.

○참고인 이성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참고인 이성민 예.

○김기표 위원 계속 봅시다.

그다음에 4월 10일입니다.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데 검찰도 굉장히 서두르네요.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고 상고이유서도 20일의 기간이 있는데 거의 소송기록 송부가 금요일 날 됐으면 그 소송기록송부서, 접수통지서가 아마 4월 8일이나 9일쯤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그다음 날 제출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의 1~2일 안에, 하루이틀 안에 제출했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누구와 호흡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검찰도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20일이면 검사들이 다른 일로 바쁘니까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슬슬 쓰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20일만 지키면 되니까.

자, 봅시다. 그리고 4월 21일 날 이제 이재명 피고인 쪽에서 답변서 내니까 답변서 제출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소부에 회부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요. 이런 사례 본 적 있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전혀 없지요. 그다음에 4월 24일 날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 한 다음에 바로 5월 1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요? 36일 만에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잖아요.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능력을 보여 줬지요. 유일하게 역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상고심에서 36일 만에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6만 페이지 이상 되는 기록에 대해서 36일 만에 우리는 선고할 수 있다라는 아주 울트라 능력을 보여 줬습니다.

그려면 국민 개개인한테도 이런 것대 그대로 적용해서 36일 만에 이제 판결할 수 있겠네요,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그걸 기대할 수 있겠네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참고인 이성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려면 그다음 날 파기환송된 다음에, 5월 1일 날 파기환송돼서 그다음 날 환송심에 기록이 바로 그날 송부됐어요. 가능합니까?

○참고인 이성민 불가능합니다.

○김기표 위원 불가능하지요?

○참고인 이성민 이날도 일반송달이 아닌 집행관송달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기록을 아예 들고 갔네요. 보니까 다음 날 기록을 들고 갔어요.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배당 바로 되지요. 배당도 한 보통 2~3일 이따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공판기일 바로 정하지요. 이 파기환송심 재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배당받자마자 기록도 안 보고 바로 공판기일부터 잡지요. 이런 예를

보셨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우편송달 해 보지도 않고 집행관송달 촉탁 신청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참고인 이성민 집행관송달이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일반송달에 비해서.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이걸 안 하는 거잖아요.

○참고인 이성민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그거 해 보지도 않고 집행관송달을 촉탁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이성민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대법원이 한 짓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36일 만에 파기환송심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니까 판결에 승복하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뢰를 어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부터 반성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사법부 신뢰, 묵묵히 일하는 일선의 판사·법원공무원들 그 명예를 더럽힌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인 이성민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또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기본 예의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서석호 변호사님, 김앤장 변호사시지요?

○증인 서석호 근무하다가 지난주에 사퇴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왜 그만뒀어요?

○증인 서석호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너무 퍼져서 제가 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뭐 그러면 금방 나오고 그러나요?

○증인 서석호 제가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통보만 하고 끝냈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하고 아나요?

○증인 서석호 예, 대학교 친구입니다.

○서영교 위원 대학교 친구지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윤석열하고 대학교 친구지요?

○증인 서석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윤석열하고…… 후원금 냈지요?

○증인 서석호 예, 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얼마 냈습니까?

○증인 서석호 그때 법정 한도 금액 1000만 원을……

○서영교 위원 1000만 원 냈지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1000만 원 내기 쉬운가요?

○증인 서석호 제가 평소에……

○서영교 위원 이준일 교수님, 1000만 원 지원금 내 본 적 있어요?

○참고인 이준일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지요.

○증인 서석호 제가 평소에 내던 것보다……

○서영교 위원 1000만 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정말 절친이고.

대학교 때 친구라고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대학교 때 친구, 절친이지요?

○증인 서석호 절친이라기보다 계속 꾸준하게 친구로 지내 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친구로 지내 온, 한 사람은 검사였고 또 한 사람은 김앤장 변호사였어요. 그렇지요?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저는 김앤장에 2008년에 들어갔습니다.

○서영교 위원 2008년에 들어갔으니까 검사하고 대통령하고 하는 동안 김앤장 변호사로서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친, 친구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서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증인 서석호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만류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탄핵당했고 파면당했고 그리고 재판 중이에요.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지금 ‘만류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 그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증인 서석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냥 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과 밥 먹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서석호 시기를……

○서영교 위원 윤석열과 밥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술도 먹었지요? 절친이시지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석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금호법학회 하시지요?

○증인 서석호 예, 금호법학회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금호법학회 멤버시지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금호법학회에서 뭐 맡으셨어요?

○증인 서석호 제가 꽤 오랫동안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총무 맡았지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금호법학회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이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김앤장 변호사 하면서 그런 일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대법원장이 나와서 공개하면서 파기환송시키는 거 본 적 있어요?

○증인 서석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뵙 적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런 거 본 적 있냐고요. 그런 판단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서석호 너무 빨리 물으셔서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영교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해서 2심에서 무죄 난, 그것도 발언에 관한 내용 그리고 모두 다 무죄예요. 그런 내용을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선후보를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후보로 출마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후보로 등록하면 그거 날려 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객관적으로 돼요, 안 돼요? 변호사시잖아요.

○증인 서석호 개업 변호사로서 판결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나 이해관계도 아닌데 말씀드리는 것은 좀……

○서영교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숨기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과 가장 친한 서석호 김앤장 변호사, 금호법학회 총무 그리고 지금도 계엄이든 아니면 조희대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중간에 있다고. 그게 서석호고 서석호는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김앤장을 그만둔 거예요. 김앤장에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이런 걸 그만두기가 쉬워요? 거기서 대응하면 되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증인 서석호 저 때문에……

○서영교 위원 그러면 윤석열과 조희대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조희대 대법관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왔어야지요.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생중계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성민 법원본부장님,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 기록 다 봤대요, 안 봤대요?

○참고인 이성민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 7만 장 다 복사해서 갖다주나요?

○**참고인 이성민**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복사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스캔해서 봤다고 하는데 스캔해서 7만 장 보여 주나요?

○**참고인 이성민** 스캔을 하게 되면, 저도 스캔한 기록을 보지만 이 기록의 내용들을 한번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참고인 이성민** 이 기록을 보다가 앞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서영교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윤석열과 조희대, 한덕수 그리고 서석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다 훼손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법원본부장께서 대법원장 사퇴해라 이런 얘기해 본 적 그전에 있어요?

○**참고인 이성민** 법원공무원으로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쉬운 거 아니지요? 어떻게 법원에서 노조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법원의 신뢰도를 다 깎아 먹고 훼손해 놓고 법원 사람들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기록 보지 않아 놓고 기록 본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대선후보의 판을 훼손해 버리려고 하는 건 누구의 의도예요?

3시에 판결 내고 4시에 한덕수가 대통령후보 출마해요. 그리고 한덕수가 새벽 1시간 남겨 대선후보로 등록해요. 그걸 누가 뒤에서 조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뒤에서 조종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렇게 다 의심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김앤장이 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객관적인 얘기와 제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서석호 변호사, 언제 김앤장으로 돌아가세요?

○**증인 서석호**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일단……

○**박지원 위원** 돌아갈 것 아니에요?

○**증인 서석호** 이게 잘……

○**박지원 위원** 서영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김앤장 법조 카르텔이 윤석열 내란, 현법재판소 일부부터 모든 자문을 했다. 사실이지요?

○**증인 서석호**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피신해서 나왔어요, 다시 돌아갈 건데?

○**증인 서석호** 피신한 게 아니고 제가 해결하고……

○**박지원 위원** 앞으로도 제가 법사위원 3년 더 합니다. 3년 내에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갈 거예요?

○**증인 서석호** 저는……

○**박지원 위원** 못 돌아가요. 김앤장이 물론 로펌이기 때문에 모든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우두머리를 우리나라 최고의 김앤장 로펌이 그걸 가지고 법조 카르텔로 그 못된 짓을 했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사법개혁…… 지난 국회에서도 김앤장, 개혁의 대상으로 혼났지요. 이게 말이 돼요?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서석호**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그 법조인들……

○**증인 서석호** 저는 송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박지원 위원** 진짜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빨라 놓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김앤장이 내란 수괴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석호 변호사가 브리지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잖아요.

○**증인 서석호**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이준일 교수님,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총체적으로 사법 불신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장이 제 기록을 철저히 보고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는 게 당연하지요?

○**참고인 이준일**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36일 만에, 9일간 심리해서 6만 8000쪽의 기록을 안 보았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우리 사법부의 재판장들은 기록을 보지 않고 나에게 유죄 판결을 줘’ 불신됐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준일** 이번 사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의 공정성, 사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력한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특혜를 줍니까? 9일간 기록도 보지 않고 파기환송하면, 신속한 재판을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보장을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준일** 대법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무 빠른 정의는 사실상 정의가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너무 빠른 정의지요. 그건 정의도 아니에요. 사기지요.

○**참고인 이준일** 날림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졸속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 이러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개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이준일 맞습니다. 오랫동안 사법에 대한 불신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서 사실은 뭐 스모킹건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성민 본부장님, 지금 전국 모든 법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사퇴를, 용퇴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요구하고 있지요?

○참고인 이성민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인 이성민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탄핵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 자진 사퇴가 안 된다 그러면 탄핵의 칼날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 대법원장 스스로가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는 명령을.

○박지원 위원 26일 법관대표자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참고인 이성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관의 구성원들 성향이 그렇게 진보적이지는 않아요. 진보적이지는 않아서, 이번에 법관회의에 참석을 하는 사람 숫자나 또 이 회의가 열리게 되는 구성을 하는 사람 숫자도 되게 적었을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뾰족하게 사법부를 질타하는 그런 내용의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제가 큰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26일 법관대표자회의가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 법관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결론을 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탄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사법부에서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검찰, 사법부 즉 법조 3륜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건데.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성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법부의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사퇴하라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 조기 사퇴가 정답이지요?

○참고인 이성민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법관대표자회의를 국민과 함께 주시합시다. 그날이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될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본부장님, 나도 한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법원공무원노조를—아직도 마

찬가지지만—적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여쭤봅니다.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법관을 중원하는 것이 오히려 전합체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상고 사건의 폭주가 일어나고…… 지금 이해하시지요? 상고 사건이 너무 많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웃으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웃는 겁니다.

○**참고인 이성민** 혹시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청문회를 작년 연말에 했었지요. 그 당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 어쨌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재판 지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분위기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동일하게 판사정원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 줄 수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을 끌어서 작년 12월 연말 돼서 판사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아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상고하지 않을 사건도 너도나도 상고를 하게 된다.

○**참고인 이성민** 그 말은 말이 안 맞지요.

○**박범계 위원** 말이 안 맞지요.

○**참고인 이성민** 결국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박범계 위원** 잠깐만.

저도 변호사를 해 봤지만 1·2심 패소를 한 당사자가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때 상고를 결심하는 당사자는 내 사건을 대법관들이 읽어 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내 사건을 속속들이 살펴볼 것이라니 기대로 하지요. 맞지요?

○**참고인 이성민** 당연하지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지금 재판 지연은 물론이고 정말 절절한, 정말로 하소연하고 싶은 내 사건을 최고법원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래도 눈여겨봐 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 그것이 국민에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맞지 않는 얘기지요?

○**참고인 이성민**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큰소리를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대법 전합체에 대한 비판은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고. 한국 헌법사에서 3공에서 4공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는 ‘16인 이하로 한다’라고 헌법 규정에 대법관 수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집권을 한 이후에 소위 국가보위법회의라는, 아시지요?

○**참고인 이준일** 예.

○**박범계 위원** 그러한 반헌법적 기구를 통해서 날림으로 ‘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5년이, 40년이 흐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대법관이, 대법원이 저항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이준일**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저항 안 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저항을 못 했어요. 그때 지금 얘기

하는 것처럼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 못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바람에 풀이 뉘듯이 쪽 옆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화석화된 대법원이 된 겁니다.

이 즈음에 그 당시 전두환조차도 뭘로 포장했느냐, 국민의 사법적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래서 헌법에 대법관의 수를 규정하지 않고 입법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대법관 수를 정한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지고지순의 그러한, 정말로 엄청난 헌법적 결단이어야만이 늘릴 수 있습니까, 교수님?

○참고인 이준일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서 대법관 수를 정하는 것은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맞지요?

독일이 소부도 두고 있고 대법원 내에 여러 법원들을 두는 형식으로 대법관들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대략 한 130명에서 더 많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 혹시 우리가 대법관을 중원한다면 그 구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견이 계십니까?

○참고인 이준일 독일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최고법원을 5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법률로써 일단 대법관 숫자를 최소한 지금보다는 2배 이상 해서 부로 나누어서 독일이 민사 16부, 형사 6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민형사를 나눈다든지 행정이라든지 조세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 대목에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형사·민사 나누면 형사부가 또 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사를 담당하는 그분들, 국민적 이해가 크고 관심이 높은 국민적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돼 가지고 또 거기서 소수의 대법관들이 막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부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32명으로 구성된 대합의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소부도 있겠지만 지금의 전원합의체처럼 대합의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5분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윤석열, 서석호’ 이렇게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옵니다. ‘서석호와 윤석열, 우리는 하나다. 내란 배후의 인맥 카르텔 추적’ 해서 워치독이라는 데서 글을 썼더군요.

먼저 사진 하나 띠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 동그라미의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석호는 부영그룹 고문변호사, 한덕수 부인은 부영에 그림 판매, 부인 사촌 오빠는 부영 미국법인 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 서석호 예.

○위원장 정청래 이렇게 써 있어요.

부영그룹 고문변호사 한 적 없습니까?

○증인 서석호 자문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맞네요.

한덕수 부인은 부영에 그림을 판매했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모르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선캠프 고액 후원자 중 서석호가 가장 먼저 1000만 원 입금’ 이건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호 프로젝트 멤버로 윤석열 대권 설계. ‘구수한 윤석열’ 책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신문기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영그룹, 캄보디아 마음 얻다. 버스 200대 기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 됐다’, ‘부영, 캄보디아 금융시장 공략 강화. 본점 이전·영업점 확대’ 이런 기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저는 모르고, 부영 자문을 그만둔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열아, 먼저 손 내밀고 더 많이 들어라’ 하는 것이 신동아 기사인데 혹시 이 기사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2023년 4월 23일 ‘석열아, 먼저 손 내밀고 더 많이 들어라’ 이게 본인도 관련 있는 기사입니까?

○증인 서석호 제가 얘기한 것도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읽으신 그 글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취임 1년 때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동아에서 또 1년 후에, 2024년 11월 5일 임기 반환점 돌 때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썼어요. ‘석열아,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이런 기사 제목인데 기억하십니까?

○증인 서석호 그런 기사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청래 기사 제목을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이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첫 번째 1년 때 했던 조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손 내밀고 더 많이 들어라’ 이거를 민심이 이 반했을 때 더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왜 다 이 모양입니까? 민심이 더 안 좋아지면 더 손 내밀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비상계엄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비상계엄 직전에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영어에 이런 격언, 속담이 있지요.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증인 서석호 예.

○위원장 정청래 한 사람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형배 조희대 의자 비교’ 이렇게 치면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지요. 한 사람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한 사람은 법원가족들한테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문형배 재판관 뒤의 의자를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뒤의 의자를 보십시오. 무슨 시시포스의 돌도 아니고 저렇게 무거운 의자를, 저렇게 높은 의자에 굳이 대법관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의자가 작고 낮다고 해서 나쁜 판결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1분 더 주세요.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관들은 아무 한 일이 없다. 검사들이 쪽지를 건네면 그걸 판사들이 그대로 읽었던 시절이 있었다. 법관들이 지금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는 것은 법관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법관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책만 봤고 길거리에서 싸운 사람들 덕분이다’ 이렇게 일갈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을 하면서 냈던 불출석사유서도 보면 내용이지만 이처럼 무성의할 수 있을까, 이처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에 이렇게 오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일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참고인 이준일 아까 사법 쿠데타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사법부의 이런 행동, 정치행위 이것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헌법적 원칙을 훼손했고 그런 의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까 많이 말씀 나왔듯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탄핵소추 발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상 오늘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균택 위원 서석호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균택 위원 고등학교 4년 차이인데 안 만난다 이 말입니까?

○증인 서석호 예.

○박균택 위원 뺑뺑이 세대라고 상대를 안 해 준 겁니까?

○증인 서석호 꼭 뺑뺑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만 했고 그분은 법원에 계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또 동문회도……

○박균택 위원 증인보다 경북고 14년 후배인데도 과거 시험 시절의, 뺑뺑이가 아닌 시절의 경북고 선배들이 챙겨 주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증인 서석호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연수원의 동기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인연이 생길 수 있는데……

○박균택 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5인방일 정도로 친한 건 맞지만 조회대 대법원장은 만나 본 적이 없는 사이다?

○증인 서석호 예,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핸드폰에 번호도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없습니다. 연락하거나 연락을 받거나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증인은 전문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서석호 저는 일반 기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대법원 계류 증인 사건과 관련해서 자문 맡아 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 서석호 예, 없습니다. 송무 일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 말을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서석호 아마 제보하신 분도 제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때문에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친한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4년 차이인데 안 만났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북고……

○증인 서석호 사실 저하고 동기인 경우에는 8년 차이가 나거나 이런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하고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또 계속 법원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뭘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일 교수님, 아까 사법의 독립성과 또 그와 대비되는 민주성·책임성 이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법원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 놓고도 국민의 저 어떤 분노 그리고 내부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사법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성벽을 쌓고, 자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지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법원개혁 문제가 나올 때 법원의 민주성 또 책임성 부분,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 같은 것들 있으면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준일 현재 배심원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최고법원장에 대한 선거제도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일단 충분히 논

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헌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법관이 직업법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제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서석호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증의 혐의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영그룹 고문변호사 하신 적 없다고 하셨나요?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과거에 했는데 끝난 지가……

○장경태 위원 하셨지요?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자문한 적은 있는데 고문변호사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던데요?

○증인 서석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다.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2006년에 고문변호사 하셨습니다.

남기춘 검사 잘 아시지요?

○증인 서석호 예, 압니다.

○장경태 위원 동기시지요?

○증인 서석호 대학교 동기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동기시지요?

○증인 서석호 예,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확인차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윤석열 정권 들어서 만난 적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저녁 자리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경태 위원 계엄 이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계엄 이후에는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장경태 위원 김주현 민정수석은요?

○증인 서석호 김주현 민정수석은 만난 적 없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사람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증인 서석호 만난 적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만난 적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요?

○증인 서석호 만난 적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만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증인 서석호** 잠깐만요, 이상민 장관은 몇 달,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식장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남기춘 검사장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으십니까?

○**증인 서석호** 예.

○**장경태 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서석호** 잠깐만 말씀…… 남기춘 변호사는 제가 안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예.

한덕수 총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봉 5억씩 김앤장에서 약 4년 4개월간 18억의 보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법률가가 아닌 한덕수 전 총리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증인 서석호** 저는 원래 사실은 계신 줄도 몰랐는데 지난번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계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주미대사 하신 경력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외국 클라이언트들하고 미팅을하거나 회의를하거나 자문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렇게 보통 많이 줍니까? 이렇게 보수를 많이 줍니까, 고문료를?

○**증인 서석호** 제가 보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일 교수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재판부가 미국처럼 5~9인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독일처럼 소부 8인으로 구성돼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사항은 합의부로 격상시켜서 16인 또는 30인 이렇게 재판부로 올려서, 우리나라 12인의 전원합의체 회부보다 오히려 소부 간에 합의부를 구성해서 격상시켜서 16인, 30인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대법원의 체계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만약에 독일처럼 150명이 된다고 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명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8인의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16인, 30인 합의부를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맞습니다. 지금 독일 연방대법원이……

○**장경태 위원** 독일 연방제가 대재판부를 포함해서 격상시킨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참고인 이준일** 그렇습니다. 민사부가 32인, 형사부가 24인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도 신건 재판연구관이 있고, 만약에 신건 연구관들이 못 하면 심층 연구관으로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합의가 안 되고 복잡한 사안이다 또 원심을 파기하거나 환송해야 된다 그러면 심층 연구관들이 해서 더 정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이준일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안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어떤 이유로 나오는지, 조희대 대법원장마저도 법관 증원 300명 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은 챙기겠다고 하면 누가 법관을 증원하고 싶겠습니까?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준일 아마 법관의 희소성에 근거한 그들만의 어떤 우월성, 엘리트 의식을 갖고자 하는 견고한 카르텔적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귀족 법관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이준일 교수님, 이번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선 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사법부 불신의 흑역사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인혁당 사건이 있었고요. 인혁당은 올해로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법 피해자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여정남 등 여덟 분에 대한 사형 집행이 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인혁당 사건, 74년 중정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법원에서 사법살인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이 다시 재심을 해서 무죄가 모두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사법살인을 한 사건은 진보당 조봉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조봉암 사건도 명백히 사법살인이고 선고된 지 17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이에 버금가는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사건이고요.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를 만에 대법관 10명이 즉심을 하듯이, 즉결처형을 하듯이 이를 만에 유무죄 결론을 냈습니다. 6만 8000페이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사법살인 시도를 한 회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열망이 높거든요. 이준일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이 사법개혁의 방향, 독일에서 또 유학을 하셨지요? 어쨌든 사법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준일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은 아니지만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의 대단히 높은 권력이므로, 쿠데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권력의 전복과 침탈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미래의 권력 내지는 정적에 대한 이런 제거방식은 다 쿠데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법부의 정치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법 내지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통제도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일 교수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잖아요?

○참고인 이준일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교수님 몇 년 하셨지요?

○참고인 이준일 한 25년 넘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문도 많이 쓰시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공은 뭐 하셨지요?

○참고인 이준일 헌법학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헌법학이지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방송국 매체를 통해서 이 청문회가 생중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준일 교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어서 헌법학의 권위 있는 학자이시고 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공신력이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위원장이 대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이성민 본부장님, 법원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희대 또는 대법관들 관련해서?

○참고인 이성민 전국에 화요일부터 현수막이 다 걸렸고 1인 시위를 매일 아침마다 전국 법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대법원장 사퇴하는 게 답이지요?

○참고인 이성민 그 말을 이렇게 좀 답변하면 좋겠네요.

○서영교 위원 빠르게 해 주십시오.

○참고인 이성민 법치주의라는 말이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지 법관에 의한 지배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지 법관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인 이성민 예.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 조희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

○참고인 이성민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그런데 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돼서 내가 하면 모든 것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참고인 이성민 국민주권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렀는데 이제 그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딱 걸린 겁니다.

윤석열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걸렸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그의 내란을 파면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고 이제 죄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될 겁니다.

조희대, 조희대도 또한 그 대법원장의 잘못된 권력을 그렇게 잘못되게 휘둘렀으니 이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법원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사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호 변호사님, 윤석열과 가장 최근에 통화한 적이 언제입니까?

○**증인 서석호** ……

○**서영교 위원** 빨리 답하세요.

○**증인 서석호** 제가……

○**서영교 위원** 절친이지요? 가장 최근에 언제 통화했어요?

○**증인 서석호** 총 재직기간, 공인이 된 이후에 실제로 통화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가장 최근에 통화한 적이 언제쯤이에요? 김건희하고는 통화한 적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는 만난 적은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저기……

○**서영교 위원** 지금 잘못하면 다 위증이에요. 김건희하고 만나고 통화한 적이 없다 이거지요?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통화한 적은 없고 만난 적은, 만났다가보다도 잠깐 인사……

○**서영교 위원** 그러면 통화한 적 없으면 가장 최근의 통화 내역은 보여 줄 수 있나요?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조희대랑 만난 적이 없다고요?

○**증인 서석호** 예,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경북고·서울법대 동문이지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금호법학회 총무지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조희대도 금호법학회 회원이지요?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금호법학회가 서울대 그다음에 경북고 사람들이 만난 건데 거기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증인 서석호** 그게 아니고 작고하신 김철수 교수님의 제자들만 모이는 모임이라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거기 회원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조희대와 경북고·서울대 같이 동문인데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서석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한덕수하고는 같이 김앤장에 있었음에도 그렇다고 답변을 했어요.

○증인 서석호 예,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부 다 체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윤석열하고는 가장 최근에 언제 만났어요?

○증인 서석호 가장 최근에, 둘이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인이 된 이후에 둘이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서영교 위원 말하세요. 둘이서가 아니라 언제 만났냐고요. 만나고 다 이야기하고……

○증인 서석호 대학 동기들과 모이는 자리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고.

○서영교 위원 한번 화면을, 지금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정리할게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석호 변호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경북고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향이라는 소리지요. 윤석열과 서석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아주 절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조희대, 이 다리를 누가 놔 줬을 거냐라고 하는 데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인 서석호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관여된 일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석호 변호사와 한덕수는 같은 김앤장 변호사예요. 그렇지요? 김앤장에서 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증인 서석호 한덕수 님과 같이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한덕수와 윤석열, 한덕수와 조희대, 조희대와 한덕수 관계 속에서는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내가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충성 맹세처럼 했다고 하는 제보를 아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불출석사유서 하나를 내고 비겁하게 숨었어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이때 나와서 뜻렷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뜻렷한 건 하나도 없고 비겁하게 숨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법 쿠데타, 대선개입 그리고 정치개입에 대해서 법적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석호 변호사께서는 그러면 윤석열과 언제 만났었는지, 김건희하고는 언제 만났었는지, 몇 번이나 어떻게 만났었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통화 내역도 우리는 다 의심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역을 제공해 줄 걸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호 증인.

○증인 서석호 예.

○위원장 정청래 잘못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도움을 드

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딱 대답하시면 됩니다.

윤석열과 가장 최근에 전화한 적이 언제입니까?

○증인 서석호 통화를 한 것이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장 정청래 경으로 해 주세요.

○증인 서석호 12월 중순경에 한 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제가……

○위원장 정청래 비상계엄 이후지요? 12월 중순경이면 비상계엄 이후라는 뜻이지요?

○증인 서석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때 한 번 했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그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간단한 내용인데 저한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아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제가 전화하는 사이에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 통화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윤석열 전화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증인 서석호 그냥 전화가 와서, 평소에 쓰던 전화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본인 핸드폰에 입력돼 있었기 때문에 알았겠네요?

○증인 서석호 예.

○위원장 정청래 김건희 여사와는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한 사실은 언제쯤입니까?

○증인 서석호 제가 만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동기 모임이 두 번 있었는데……

○위원장 정청래 그게 언제입니까?

○증인 서석호 동기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그게 사저로 나가기 전에 짐 싸고 있을 때 동기들 모임이, 거기서 차담을 잠깐 했는데……

○위원장 정청래 관저에서 했었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갔는데 그때……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관저에서 대학 동기 모임을 두 번 했다는 얘기지요?

○증인 서석호 그러니까 두 번 했는데 한번은 다른 곳이고, 짐 싸서 나가기 전에……

○위원장 정청래 한 번은 관저에서 했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증인 서석호 짐 싸서 나가기 전인데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일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짐 싸서 나가기 며칠 전쯤입니까?

○증인 서석호 제가 동기들이랑 갔을 때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날짜로 보면……

○위원장 정청래 짐 싸서 나가기 한 사오 일 전입니까?

○증인 서석호 예, 며칠 걸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두 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관저에서 만났고, 한 번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증인 서석호 한 번은 취임 이후에 자리가 있어 가지고 갔었는데 그곳은 제 기억에

삼청동 쪽에 있는 한옥 같은……

○위원장 정청래 안가셨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한옥……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거기가 비상계엄 직후에 이완규, 김주현, 이상민 등이 만났던 그 안가겠네요?

○증인 서석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신문하실 분 있으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서석호 증인.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지금 김건희 만난 날이 관저에서 만났다 그랬지요?

○증인 서석호 만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영교 위원 초대받았습니까?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동기들과 거기 갔는데 먼저 손님이 계셔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잠깐 인사하지 그러냐 이렇게 해서 아마 잠깐 나와서 그냥 목례만 하고 들어가서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영교 위원 김건희는 그렇게 만났고, 친구들이 왔으니까 김건희가 나와서 인사했고 윤석열하고는 모임을 같이했다 이런 얘기지요?

○증인 서석호 모임이 아니고 그냥 한 시간 정도 차담을 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면 한 시간 차담이 모임이 아니면…… 아니, 동기들이 모여서 갔다면서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동기들이 모여서 갔고 그게 언제라고요? 1월?

○증인 서석호 아니지요.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까……

○서영교 위원 4월 4일과 관저에서 나오기, 그 사이라는 거지요?

○증인 서석호 예. 4월 6일인가, 일요일 오후에……

○서영교 위원 그래서 마당에서 만났습니까?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마당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어떻게 표현하지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때 같이 갔던 동문은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서석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서영교 위원 동문들 사진 아까 다 나왔어요.

○증인 서석호 너무 좀 사적인 것이어서……

○서영교 위원 동문들 사진 띄워 줄 수 있어요? 동문들 사진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문들 사진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입니까?

○증인 서석호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누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서영교 위원 윤석열과 김건희를 윤석열 관저에서 만났다 그런 얘기지요?

○증인 서석호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관저에서 만났고, 비상계엄 하고 나서 12월 중순에 만났고……

○증인 서석호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아까 12월 중순에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서석호 그거는 그때쯤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서영교 위원 그러면 12월 중순에 통화를 했고 관저에서 만난 게, 최근에 만난 게 한번이라는 소리입니까?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윤석열과 통화는,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 그 집으로 가려면 통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가 통화를 했나 보지요?

○증인 서석호 예. 다른 친구가 오후에 잠깐, 사실 파면당했으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집 떠나기 전에 잠깐 얼굴 보기로 했는데 같이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영교 위원 보세요, 그 관저가 경호가 있어서 함부로 못 가요.

○증인 서석호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서영교 위원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하니까 간 거예요.

○증인 서석호 예, 그렇게 가기로 했다고 얘기해서 제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그러면 그 통화 내역 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윤석열을 언제 만났었는지 김건희를 언제 만났었는지 통화는 언제 했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와는 지금 만나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돌아다보고 그러면 이때 윤석열과 다리를 놓은 그 친구는 누구인지 이런 정도까지 자료를 낼 수 있지요?

○증인 서석호 굉장히, 대학 동기들 잠깐 만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사적인 부분인데……

○서영교 위원 보세요. 윤석열이 탄핵이 됐고 그 공간은 아주 중요한 증거의 공간인데 그 증거의 공간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안 나오면서 증거가 소멸되고 있다. 그리고 물을 도대체 몇 리터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다가 새벽 1시까지 불야성을 이뤘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그 관저에 갔는가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서석호 변호사예요. 그리고 아주 절친의 친구이고 아까 말했듯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후원금을 가장 먼저 낸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법적인 것을 논의하고 상의하고……

서석호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대학 동기 누구입니까? 서울대 법학과 그 동기들 아닙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희대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한덕수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교집합은 서석호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오늘 와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증인 서석호**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훨씬 가까운 것만 드러났어요. 다른 것은 수사로 드러나겠지요.

지금 핸드폰 바꿨습니까, 혹시? 안 바꿨습니까?

○**증인 서석호**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핸드폰 관련한 내역을 낼 수 있겠네. 통화 내역들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줄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한 얘기가 있으면 한 1분씩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석호 증인부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서석호**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이번 일에는 정말 단연코 추호의 관여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유포되는 허위사실들이 빨리 좀 수그러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이성민 참고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참고인 이성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계엄 선포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로 그렇게 망가져 갈 때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고 다음 날 맨발을 벗고 뛰어가 봐야 될 본인이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금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이번 판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이준일 교수님.

○**참고인 이준일**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법원이나 법관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그 양심은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당연히 여기에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상식이나, 법원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건전한 상식이나 통상적인 법감정을 뛰어넘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판결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사후적 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

###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 ○출석 증인

서석호(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출석 참고인

이성민(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